

2014년 최종보고서

안전보건진단기관 내실화 및 평가제도 도입방안

피영규 · 정종현 · 강지웅 · 이사우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요 약 문

1. 연구제목

안전보건진단기관 내실화 및 평가제도 도입방안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14년 8월 현재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정되어 있고, 안전진단기관 10개소, 보건진단기관 3개소 건설안전진단기관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진단기관은 대부분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진단물량 대비 진단기관이 부족한 실정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환경측정기관, 근로자건강진단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 신뢰성 및 내실화 등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가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진단기관도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 타 지정기관의 평가제도와 비교 및 검토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방문 기초조사를 실시
-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을 위한 관련 기준 검토
- 법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도개선안 마련

4. 연구결과

-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을 재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등의 지정기관 평가 관련 규정을 제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을 명시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수록
 -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ILO 협약 등 외국의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정리
- 타 지정기관의 평가제도와 비교 및 검토
 -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 안정성 평가의 법과 시행규칙을 비교하여 4가지 평가기준(안전보건진단의 능력,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을 도출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방문(기초)조사를 실시
 - 8개의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장비 현황, 평가의 중요성, 평가 주체, 평가주기, 평가반 구성 등 일반적 특성, 공표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현황, 보유장비 현황, 시설현황, 평가기준의 중요정도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고시 제정에 활용
-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을 위한 관련 기준 검토
 -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세부지침안 마련
 - 평가기준별 평가항목 수는 안전·보건진단의 능력(일반안전 및 건설안전 9 문항/보건진단 11문항),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16문항/18문항), 시설·장비의 성능(9문항/10문항) 및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13문항)을 개발
 - 세부지침안을 근거로 안전보건진단기관 실태조사를 실시

- 법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도개선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개정안, 시행규칙 제130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의 제개정안 제시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신설안 마련
 -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표준화방안 마련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안전보건진단기관 방문조사 수행결과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
 - 문헌조사와 방문 기초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되는 규정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규제를 수행하는데 주요하게 활용
 -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 제도를 도입을 명확히 함으로서 타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 평가와의 형평성을 유지 및 합리적인 안전보건기관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 제시가 가능
- 기대효과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운영현황, 기관 지정, 진단결과의 활용성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제시됨으로서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향후, 추가 규제 및 규제완화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진단기관의 내실화 및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 우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사고 및 질병 예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비용 창출

6. 중심어

안전보건진단, 기관평가, 내실화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 연구책임자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피영규 교수
- ▶ 연구원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장창봉 연구원
- ▶ 연락처 : T)052-7030-856, F)052-703-0337, E)jcb1276@gmail.com

<본문 차례>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II. 연구내용 및 방법	6
1. 연구내용 및 범위	6
2. 연구방법	7
1)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8
2) 타 지정기관의 평가제도와 비교 및 검토	8
3) 안전보건진단기관 실태조사 실시	9
4)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을 위한 관련 기준 검토	9
5) 법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도개선안 검토	10
III. 연구결과	11
1.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11
1) 안전보건진단의 정의	11
2) 중대재해와 안전보건진단	11
3) 유해작업 도급 금지와 안전보건진단	12
4)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
5)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15
6)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신청 취소 등	22
7) 안전보건진단결과의 보고	23
8) 벌칙	23

9) 기타	24
2.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평가 관련 규정	27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	27
2) 등록기관의 평가	28
3)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 해제·제거업자 안전성 평가	29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31
5)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31
6)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32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33
1)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	33
2)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 지침	33
4. 타부처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48
1) 미래창조과학부	49
2) 국토교통부	54
5.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67
1)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측정기관평가 표준화 연구	67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기준 및 평가 매뉴얼 개발	68
3)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및 석면제품 실태연구 ..	69
4) 안전관리보건관리 대행기관 평가기법 및 업무 수행기준 마련 연구	70
6. 외국의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71
1) 노동안전위생법	71
2) ILO 협약	76
3) 영국	76
7. 산업안전보건법 상 타평가대상 기관의 평가항목의 비교	78

1) 평가대상기관의 능력	79
2) 기관의 신뢰성	82
3) 기관의 시설·장비의 성능	85
4) 그 밖의 제반사항	88
8. 안전·보건진단기관 방문평가 결과	91
1)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일반	91
2) 안전·보건진단기관 현황	95
3) 안전·보건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96
4) 안전·보건진단기관 시설 현황	99
5)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기준 중요정도	100
6) 안전·보건진단 내용의 중요 정도	100
9.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세부지침안	104
1) 안전·보건진단기관과 관련된 기본 사항	104
2)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평가 항목	105
3)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110
4) 시설·장비의 성능	122
5)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 사항	130
10.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결과	137
1) 평가 개요	137
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일반 현황	138
3)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결과	142
11. 법령 및 하위규정 제도 개선안	203
1) 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의 개정	203
2) 시행규칙 제130조의2 신설	207

3)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신설	210
4)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237
12.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 표준화방안	242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일반 현황	242
2)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243
VI. 요약 및 결론	288
참고문헌	291
Abstract	293
부 록	296
<부록 1> 안전보건진단기관 분야별 평가/조사표	296

<표 차례>

<표 3-1> 평가대상기관의 능력 비교	79
<표 3-2> 평가기관 결과의 신뢰성 비교	82
<표 3-3> 평가대상기관의 시설·장비의 성능 비교	85
<표 3-4> 평가대상기관의 그 밖의 제반사항	88
<표 3-5> 일반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및 중요 정도	97
<표 3-6> 보건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및 중요 정도	98
<표 3-7> 건설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및 중요 정도	99
<표 3-8>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기준 중요정도	100
<표 3-9> 일반안전진단내용의 중요 정도	101
<표 3-10> 보건진단내용의 중요 정도	102
<표 3-11> 건설안전진단내용의 중요 정도	103
<표 3-12> 안전보건진단내용의 능력평가 항목 구분	106
<표 3-13>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항목 구분	110
<표 3-14> 시설·장비의 성능 항목 구분	122
<표 3-15>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반 사항 항목 구분	131
<표 3-1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	138
<표 3-1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인력 현황	139
<표 3-18> 일반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140
<표 3-19> 보건진단기관 법정 보유장비 현황	141
<표 3-20> 건설안전진단기관 법정 보유장비 현황	141
<표 3-2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	143

<표 3-22>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 여부	144
<표 3-2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술사(지도사) 보유 여부	145
<표 3-2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종사자의 평균 경력 년 수	146
<표 3-2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진단시 외부인력의 전문성 여부	147
<표 3-2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시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147
<표 3-2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고객만족도 또는 민원제기 여부	148
<표 3-28>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149
<표 3-29>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 일수 적정성 여부	150
<표 3-30>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	151
<표 3-3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151
<표 3-32>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진단 개요 서술의 적정성 여부	152
<표 3-3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	153
<표 3-3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	154
<표 3-3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	155
<표 3-3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	156
<표 3-3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	157
<표 3-38>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	158

<표 3-39>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159
<표 3-40>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160
<표 3-4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161
<표 3-42>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162
<표 3-4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 수준 여부	163
<표 3-4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	164
<표 3-4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 ..	165
<표 3-4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	166
<표 3-4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167
<표 3-48> 보건진단기관의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등의 확인 여부	168
<표 3-49> 보건진단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 여부	169
<표 3-50> 보건진단기관의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기술 여부	170
<표 3-51> 보건진단기관의 측정결과 등의 기록 적절성 여부	171
<표 3-52> 보건진단기관의 근로자 건강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	172
<표 3-53> 보건진단기관의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확인 및 기술 여부	172

<표 3-54> 보건진단기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173
<표 3-55> 보건진단기관의 보건규칙 4대 프로그램 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행 상태 여부	174
<표 3-56> 보건진단기관의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175
<표 3-5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177
<표 3-58>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178
<표 3-59>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178
<표 3-60>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179
<표 3-6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180
<표 3-62>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181
<표 3-6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필수 장비 이외의 장비 보유 여부	182
<표 3-6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사무실 등 공간적정 여부	183
<표 3-6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184
<표 3-66>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185
<표 3-67> 보건진단기관의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185
<표 3-68> 보건진단기관의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186

<표 3-69>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187
<표 3-70>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187
<표 3-71>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	188
<표 3-72> 보건진단기관의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189
<표 3-73>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189
<표 3-74>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190
<표 3-7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191
<표 3-7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	192
<표 3-7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원에게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	193
<표 3-78>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이수 여부	194
<표 3-79>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195
<표 3-80>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196
<표 3-8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전문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	196
<표 3-82>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	197

<표 3-8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198
<표 3-8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199
<표 3-8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200
<표 3-8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결과보고서 송부기한 준수 여부	200
<표 3-8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진단 시작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201
<표 3-88> 평가대상 기관의 법령 비교	203
<표 3-89>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개정	205
<표 3-90> 기관별 평가기준 관련 비교	207
<표 3-9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신설	209
<표 3-92>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고시 비교	211
<표 3-93>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고시 비교	219
<표 3-94>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고시 비교	225
<표 3-95>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237
<표 3-96>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항목별 항목수 및 점수 구분	244
<표 3-97>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항목별 가중치 및 최고 점수	244
<표 3-98>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항목별 가중치 및 최고 점수	251
<표 3-99> 시설·장비의 성능 항목별 가중치 및 최고 점수	267
<표 3-100> 그 밖의 제반사항 항목별 가중치 및 최고 점수	280

<그림 차례>

[그림 2-1]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중요성	91
[그림 3-2]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수행 주체	92
[그림 3-3]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주기	92
[그림 3-4]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를 위한 위원회/평가반의 구성	93
[그림 3-5]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의 공고	93
[그림 3-6]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범위	94
[그림 3-7]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공표방법	94
[그림 3-8]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의 조치	95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개요

산업안전대사전에 안전보건진단(Safety & Health Diagnosis, 安全保健診斷)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있어서 안전보건의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더욱 필요할 때는 안전전문가 또는 보건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안전보건진단이 실시된다. 또한 법령에 의해 작업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감독관 청으로부터 지시되었을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문가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에 입각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에서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안전보건진단과 관련된 우리나라 주요 법률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일부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부처로는 국토교통부가 있으며 관련 고시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이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등 여러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 12월 이후 시행한 안전진단은 산업안전협회가 1983년 7월 과거 노동부로부터 종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기 이전인 동년 4월에 진단장비 구입 예산으로 9,000만원을 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산재예방예산에서 무상지원을 받을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 안전진단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7월 25일 산업안전협회가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원갑, 1989). 이후 안전·보건진단기관은 2014년 8월 현재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진단기관 10개소, 보건진단기관 3개소 건설안전진단기관 2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대부분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진단물량 대비 진단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철 협력사의 경우 2013년 5월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6월에 진단을 명령받았으나 11월 사망자 1명이 다시 발생하였고 2013년 12월 진단명령 이후 재 실시하였으나 2014년 1월에 또 다시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안전보건공단, 2013). 이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진단이 2013년 약 300건에서 2014년 약 2,000건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이 증가하는 등 진단기관 난립으로 진단수가 덩핑 등 부실진단이 우려하는 바를 일부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렇듯 최근 대형사고 발생이 원인이 되어 명령진단을 받고 진단을 수행하였으나 부실로 인해 진단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등 진단기관의 신뢰성이 의문시 되며, 진단 이후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재해자는 감소하였으나 근로자수 감소로 인해 재해율이 증가되는 등 안전보건진단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보건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신뢰성평가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한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제4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¹⁾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제1항에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²⁾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

1)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2)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4항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³⁾으로 정하고 있다.

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는 제9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기준 등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에 근거한다.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9, 2013)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는 2014년에 2회차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지정측정기관의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제10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시행규칙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4) 시행규칙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⁵⁾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시로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환경측정기관, 근로자건강진단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 신뢰성 및 내실화 등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가제도가 도입된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진단기관도 당연히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경우 내실화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가 필요함에도 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평가 근거에 대한 법률은 물론 평가기준,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질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또는 지침이나 세부 실무 매뉴얼 작성의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 ❶ 안전보건진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 ❷ 국내·외 문헌조사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와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5) 시행규칙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 1. 건강진단·분석 능력
 -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 3. 시설·장비의 성능
 -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 연구목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현행 안전·보건진단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기관의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와 더불어 진단대상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진단 제도 및 평가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진단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사례 조사 및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서비스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고찰과 진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위 고찰과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입법적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국내·외 제도를 검토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 내실화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내용과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사례 조사 및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재 평가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기관,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2 안전·보건진단기관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파악한다.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안전보건진단 명령 대상 사업장, 진단 전후 산업재해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안전보건진단기 평가 항목의 기초자료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 동안 수행된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확보하여 그 질을 평가하고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에 활용하였다.

3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본 규제의 현재 위치를 검증하고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제

도 도입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합리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안전보건진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을 개발하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내실화를 위하여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①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 ② 타 지정기관의 평가제도와 비교 및 검토
-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방문조사를 실시
- ④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을 위한 관련 기준 검토
- ⑤ 법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도개선안 마련

각 과제별 세부연구목표별 연구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1). 연구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제도 도입 타당성을 도출하고 항목 설정기준 및 관련근거를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그동안 발간된 학술지나 연구보고서 등 관련 문헌조사⁶⁾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였다. 국외 자료의 경우 해외 각국의 정부 부처 사이트 등 방문하여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되 ILO의 협약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와 및 각국의 법령 등을 검색하여 참고하였다. 외국 제도의 경우 EU의 경우 각종 지침(Directives), 미국은 직업안전보건규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과 독일 등의 규정도 조사하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의 노동안전위생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의 고시를 파악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등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모든 규정을 확인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2) 타 지정기관의 평가제도와 비교 및 검토

(1). 연구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각종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를 검토하여 평가항목 등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고용노동부, 법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현재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였다. 주요 대상 기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으로는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43조(건강진단)이 해당되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및

6) 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되는 보고서 및 간행물, 2. 기타 행정안전부, 법제처, 근로기준협회, 국제노동법연구원, 통계청,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헌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실무학회, 법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등에서 보고하는 간행물 및 보고서

고시 등을 활용하여 평가기준과 마련될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항목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그 동안 지정기관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항목을 개발에 참고하였다.

3) 안전·보건진단기관 실태조사 실시

(1). 연구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현황, 문제점 및 규제수준 등을 확인하고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규정개정에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2). 연구방법

현행 안전·보건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기관 지정, 현재 지정 수준, 진단결과의 활용성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을 대표하는 일부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논의하였다. 또한, 개발된 1차 평가항목을 일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을 선별하여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각 항목별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4)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을 위한 관련 기준 검토

안전보건진단의 분야별(안전, 보건, 건설)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사 결과와 작업환경측정기관평가도구,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도구, 석면해체·제거 안정성 평가도구 등을 참고하여 매뉴얼 개발을 위한 관련 기준 및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 이후 진단 항목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매뉴얼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중 안전, 보건, 건설 3가지 분야

별로 진단실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진단기관 평가 항목 개발에 참고하였다.

5) 법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도개선안 검토

상기의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 내실화 및 평가제도 입법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1) 안전보건진단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안전보건진단의 정의는 제2조 제6호에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중대재해와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의 경우 제4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⁷⁾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7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⁸⁾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

7) 여기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3.7.1.] [고용노동부령 제77호, 2013.3.21., 일부개정] 을 의미한다.

8)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가 규정되어 있고 그 종류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및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3항의 경우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유해작업 도급 금지와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의 경우 제1항에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4)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전문개정 2009.8.7]

49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126조(대상 사업장의 종류)제1항에 “법 제4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아래 각 호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¹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2010.7.12., 2013.8.6.>. 또한, 영 별표 1 제6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는 적용제외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5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

- 9)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11)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삭제 <2014.3.12>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¹¹⁾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2>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⑦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1.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제2항의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도록 하고 있다.

5)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및 제33조의 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이 해당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시행령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 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시행령 별표 9, 시행령 제33조의 5관련)

가) 종합진단

4.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바.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나) 안전기술진단

안전기술진단은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이다.

다) 보건기술진단

보건기술진단은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이 해당된다.

(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시행규칙 제127조 관련)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관련이며 그 내용은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진단분야별로 각각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규정하고 있다.

가)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별표 16)<개정 2014.3.12>

1. 인력기준

① 안전분야

- 가. 기계·화공·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

② 보건분야

- 가. 의사·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사는

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 분야: 별표 16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나. 보건 분야: 별표 17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 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나)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별표 16의2)<개정 2014.3.12>

1. 공통사항

가. 사무실

나. 장비실

2. 일반안전진단기관

일반안전진단기관의 대상업종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① 인력기준

1. 기계·화공·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② 시설·장비 기준

1. 회전속도측정기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
5. 표준압력계
6. 절연저항측정기
7. 만능회로측정기
8. 산업용내시경
9. 경도측정기
10. 산소농도측정기
11. 두께측정기
12. 가스농도측정기
13. 가연성가스 검지관
14. 수압시험기
15. 삭제 <2014.3.12>
16. 접지저항측정기
17. 계전기기시험기

- 18.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19. 정전전위측정기
- 20. 차압측정기

3. 건설안전진단기관

대상업종은 건설업에 한한다.

① 인력기준

-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② 시설·장비 기준

- 1. 가스농도측정기
- 2. 산소농도측정기
- 3. 재료강도시험기
- 4. 진동측정기

다)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별표 17)<개정 2014.3.12>

1. 인력기준

인력	인원	자격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의
분석전문가	2명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2. 시설기준

- 가. 작업환경상담실
- 나.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 나. 검지관 및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다. 분진측정기
-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 마. 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바. 산소측정기
-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아. 원자흡광광도계
-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차.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 카. 현미경
- 타.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파. 순수제조기
- 하. 건조기

- 거. 냉장고 및 냉동고
- 너. 드래프트 챔버
- 더. 화학실험대
-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신청 취소 등

(1). 안전보건진단의 지정신청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은 시행규칙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3개의 항¹²⁾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시행규칙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33조의4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8.7.]

(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취소 등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취소 등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제4항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¹³⁾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안전보건진단결과의 보고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는 시행규칙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9(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8) 벌칙

법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¹⁴⁾에게는 5천만

13) 산안법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 14) 1.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9) 기타

(1). 감독상의 조치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15)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 비밀 유지

법 제63조(비밀 유지)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2. <생략>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6. <생략>

15)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청문 및 처분기준

법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6)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이며 아래 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며.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업무정지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 경우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6)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8. <생략>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평가 관련 규정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함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산업법 제30조의2¹⁷⁾ 제4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6조의7에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의 경우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시행규칙 제32조의7¹⁸⁾에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4가지 기준

- 17)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18) 시행규칙 제32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 주기 및 결과 공개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71호)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2) 등록기관의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에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37조의4에서는 구체적으로 건설업기초교육기관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법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25.]

시행규칙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편,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관한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운영 실적 및 실태
2.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활용도 및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3.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의 적정성·충실성
4. 기술지도를 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빈도, 재해의 규모 등 재해발생 현황
 -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3.12]

3)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안전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¹⁹⁾의 경우 제5항에 석면 정도관리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으며 법 제38조의4 제4항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19) 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11.7.25.]

(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 2. 장비의 성능
 -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8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정도관리와 관련된 항목이다.

제9항은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²⁰⁾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었었다. 관련 고시로는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9, 2013) 제4편 지정측정기관 평가가 있으며 제1장 평가대상기관 등, 제2장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장 평가절차 등, 제4장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제9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정도관리에 해당한다.

20)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²¹⁾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시로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가 있으며 제3장 기관평가에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제1절은 제1절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절 평가절차 등, 제3절 평가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6)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제36조(안전검사) 제1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8항은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1) 1. 건강진단·분석 능력,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의 경우 제1조(목적)에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사업) 제3호에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단에서는 최초 2008년 4월 7일에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을 제정하였고 이후 2013년 7월에 개정을 거쳐 2014년 8월 1일에 전면개정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입수하여 전문을 수록한다.

1)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

이 시행지침은 2014년 7월에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진단사업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2)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 지침

(1).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진단명령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서

신청한 안전·보건진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의 시행절차, 방법,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진단명령”이란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명령진단”이라 한다)

2. “자율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자율진단”이라 한다)

3. “종합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을 말한다.(이하 “종합진단”이라 한다)

4. “안전기술진단”이란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

5. “보건기술진단”이란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보건진단”이라 한다)

6. “안전보건시스템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시스템진단”이라 한다)

7. “피해예측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위험설비별 또는 공정별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범위 예측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8. “공정안전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공정안전관리체제의 공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9. “직업병예방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직업병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10. “근골격계질환예방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11. “건강증진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뇌·심혈관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발병위험요인 평가, 건강진단결과 분석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12. “진단모니터링”이란 안전보건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진단보고서에 대한 진단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진단 실시내용의 적합성, 진단 전·후의 재해감소, 진단요원의 업무역량, 진단장비의 활용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보건개선계획 확인”이란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승인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6조(업무분장)의 별표2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진단’, ‘위험기반검사’, ‘타 법에 의한 안전진단’ 등과 기타 사업장 등에서 대가를 받거나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 사업(이하 ‘진단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안전진단은 따로 정한다.

제4조(진단사업의 종류) ① 이 지침에 의한 진단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나목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진단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법 제49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명령을 받고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나.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의뢰하는 안전진단

라. 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등

2. 보건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나목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진단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법 제49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건진단 명령을 받고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나.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보건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의뢰하는 보건진단

라. 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등

3. 종합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호 또는 2호 나목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진단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1호 및 2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진단

4. 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단내용

②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은 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르되 [붙임 1] 과 같다.

(2). 진단절차

제5조(진단사업 담당부서) 진단사업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공단의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되, 그 절차는 [붙임 2] 진단사업 업무흐름도에 따른다.

<진단대상 및 분야별 주관부서 및 시행부서>

진단대상 및 분야	담당부서	
	본부(주관부서)	지역본부, 지사(시행부서)
제조업(화학공장 등 안전진단 제외), 임업, 어업, 농업, 광업의 안전진단	전문기술총괄실	해당 실(팀) 소관업무 담당부서
화학공장(화학설비)등 안전진단	전문기술총괄실	
보건분야 진단	직업건강실	
금융 및 보험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사업의 안전진단	서비스재해예방팀	

제6조(진단대상의 선정) ① 진단대상 사업장은 전전년 대비 재해증가 사업장 또는 전년도 사망자 발생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명령진단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또는 제131조제7항 각호에 따라 선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진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 체결) ① 계약은 진단사업 시행부서에서 ‘징수규칙’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진단의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의 진단에 대해서는 본부 주관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에 의하여 진단명령이 아닌 사업장 등의 자율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징수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약서 내역 중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외부전문가를 진단반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현장 실제 진단일수에 보고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등 보고서 작성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등의 업종에 따른 위험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붙임 3] 의 최

소 진단일수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필요시 가감할 수 있다.

제8조(진단반의 역할) ① 진단반장은 진단계획의 수립, 시작회의 및 강평 실시, 최종보고서 제출, 진단과 관련한 사업장과의 업무협의를 수행한다.

② 진단반원은 진단실시, 보고서 작성, 진단반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진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진단반은 진단일정에 맞추어 진단을 수행하되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장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진단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진단반을 구성한다.

1. 진단반은 시행부서 인력으로 구성하되,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 내·외부의 전문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2. 진단반은 진단반장 또는 반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기술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단 연구원, 교육원은 전문기술 지원 및 연구·교육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필요시 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4. 공단 직원은 전문기술력 향상을 위해 진단반의 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다.

5. 필요시 이해관계자와의 연락체계 유지, 진단 관련 정보·자료 준비, 주요사항 보고, 보고서작성 지원 등 진단업무를 지원할 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는 지원 가능한 일정기간 내에서 진단에 참여하고, 진단반원을 부득이하게 대체하는 경우에는 동일 기술자 등급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진단반은 진단사업 시행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되 업무효율을 고려하여 본부 또는 관할 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진단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는 진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진단사업에 특수전문분야가 일부 포함되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진단대상의 규모가 크거나 진단기관의 기술력 제고 등의 사유로 민간진단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단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단은 진단범위, 진단반 구성, 진단반의 역할, 시작회의, 진단결과 강평 등 진단을 주관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유인한다.

2. 참여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일에 주관 진단기관에 제출한다.

3. 각 참여 진단기관은 진단기관 자체 진단비 및 여비 산출기준이 있는 경우 진단기관의 기준에 따라 진단사업장과 진단계약을 체결하고 정산한다. 다만, 자체기준이 없거나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진단비 및 여비 산출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⑥ 진단대상 사업장이 진단반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진단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조사) ① 본 진단 실시 이전에 사업장 등의 진단계획 수립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예비조사 시 상시근로자수, 생산품 및 생산규모, 생산시설 및 공정, 원·하청 관계 등 일반현황을 파악한다.

② 예비조사 시 과거 재해발생 현황(최근 3년 이상), 안전보건조직, 안전보건관리 대행 여부, 주요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분야별 투입인원을 결정한다.

③ 사업장에 재해현황,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결과, 화학설비 및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유해위험물질 취급 현황, 조직도,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현황, 안전검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등 진단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장은 시작회의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작회의) ① 진단반장은 진단 취지 및 당부사항, 진단반 소개 및 진단방향 설명, 진단반원 당부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② 사업장은 진단수검에 따른 대응, 진단반원 현장출입 시 전달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예비조사 시 제출요청 받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진단실시) ① 진단반원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출입규정, 작업안전수칙 등 사업장 규정과 공단의 표준업무수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진단 시에는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진단반은 매일 진단결과 주요한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고 다음날 진단추진 방향에 대해 진단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진단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개선 사항 중심으로 진단총평서를 작성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강평을 통해 정확히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에 전달한다.

⑤ 진단반원 복장은 진단복을 착용하고 개인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를 준비하여 안전한 진단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⑥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반원이 직접 해당 설비를 조작 또는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고서의 작성 및 등록관리) ① 보고서는 최소 과거 3년간 발생한 재해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는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공정과 설비를 조사하고 관련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한다.

③ 내·외부 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의 도출을 부실하게 하거나 고의로 누락시켜서는 안되며, 재해감소 성과를 우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 제출방식은 사업주와 협의에 의해 인쇄 또는 전자파일로 할 수 있다. 이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작성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 등 제출 (사업장 등과 계약한 부수)
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1부(명령진단의 경우)

3. 주관부서 및 시행부서 각 2부

⑤ 진단반장은 진단사업이 완료되면 [붙임 4]의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된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공단 ERP의 안전보건진단 프로그램에서 보고서번호를 등록하고, 진단비 및 사용장비 등을 포함한 진단현황을 입력하여 관리한다.

⑥ 진단실적보고는 ERP의 안전보건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단의 종류는 ERP의 안전보건진단 프로그램에서 종합, 안전, 보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2. 진단실적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진단을 수행한 경우 진단 실적 1건

나. 안전진단만을 실시한 경우 진단 실적 1건

다. 보건진단만을 실시한 경우 진단 실적 1건

⑦ 사업추진 등의 사유로 진단일수가 부족한 경우 보고서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작성할 수 있다.

⑧ 보고서는 제7조의 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의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에 제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명령진단의 경우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모니터링) ① 담당부서장은 진단기관 평가 또는 보고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재해감소 성과, 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 진단내용, 개선대책의 현실성, 개선이행 등에 대해 적정성을 모니터링한다.

제15조(진단장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진단반은 사업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진단에 활용할 장비목록을 작성하고 진단장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치를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진단장비의 목록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등) ① 진단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 각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단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승인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 또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진단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도사가 확인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준제고를 위해 샘플링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3). 안전보건진단전문위원회

제17조(안전보건진단전문위원회의 설치) 진단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본부에 안전보건진단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단 관련 법, 령, 시행규칙, 고시 또는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평가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진단요원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진단물량의 배정 및 진단자격의 정지에 관한 사항
5. 우수 진단보고서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으로 하며 관련분야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 관련업무 담당자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30명 이내로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동계·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기계·전기·화공·안전·보건 분야의 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기계·전기·화공·안전·보건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마.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

바. 안전보건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사. 안전보건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팀장급 이상인 사람

자.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하고, 위원장은 기술이사가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에 한하며 외부위촉 위원의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기간 중에 그 사실을 안 경우 해촉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하여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대리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그 사유를 명시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내용요지
4. 의결내용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요사항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컨설팅 등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심의 대상 사업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

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안전보건진단분야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사항에 관련되는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 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 개시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칙

제22조(진단비 산출기준) ① 진단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표에 의해 공단의 '수수료기타설비징수규정시행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진단비 산정 시 적용분야는 「기타엔지니어링사업」 분야를 적용한다.

<진단비 산출기준>

안전·보건분야(근로자수 기준)	50인 미만	50인 이상
직접인건비	징수규칙	징수규칙
직접 경비	징수규칙	징수규칙
제 경비	면 제	징수규칙
기술료	면 제	징수규칙

② 진단비 산출은 사업종류에 따른 위험도별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업종류에 따른 위험도는 [붙임 3] 최소 진단일수 기준의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에 따른다.

2. 근로자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진단계약서상 계약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또는 이와 동등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한 개의 사업장이 다수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업장 내에 협력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사업장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정한다.

3. 공단 직원이 연구, 현장 교육, 진단지원 등을 목적으로 진단반원으로 참가할 경우 당해직원에게 대한 비용은 진단비 산출에서 제외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한 필요에 의해 공단에 의뢰하는 안전·보건진단의 경우는 진단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진단을 실시한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진단비의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 회수절차는 [붙임 5] 진단비 미수금 회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공단이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단비 규정을 적용한다.

③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예비조사기간 포함)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관련자료 수집기간 포함)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포함하여 [붙임 3] 최소 진단일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관련 시험비는 별도의 작업환경측정관련 시험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⑤ 진단반장은 진단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인쇄비는 진단

비와 별도로 추후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제23조(수당과 여비의 지급 기준) ① 외부 전문가 수당은 징수규칙 제3조제2항 별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최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진단일수만큼 지급하되, 용역 계약체결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외부 전문가 여비는 여비규칙 제25조(공단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공단직원에 대하여는 일선기관 사업수행 경비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진단기관의 수준평가) ① 담당부서장은 진단기관의 진단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진단기관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진단기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진단기관 평가를 담당부서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진단요원의 교육) ① 담당부서장은 진단요원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진단반장은 진단 시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보호방법 및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을 사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장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장비활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 및 불만처리) ① 진단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불만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과 불만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제9조 각 항에 따른 진단반원은 진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 등의 정보를 사업장 등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서는 아니된다.

② 제9조 각 항에 따른 진단반원은 직무상 알게된 사업장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의무이행서약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보관토록 한다.

이후 [붙임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붙임 2] 진단사업 업무흐름도, [붙임 3] 최소 진단일수 기준, [붙임 4]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작성요령, [붙임 5] 진단비 미수금 회수 절차 등은공단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4. 타부처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고시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09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및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부칙 및 별첨 자료 등을 수록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경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지침 등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553호, 2013. 9)”,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5호, 2014. 5)”만을 발췌하여 수록하며 별첨 등을 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1) 미래창조과학부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및 기록 유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시설물의 설계 도면, 레이아웃배치도, 안전설비, 화학물질(약품)목록, 보호장구 관리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 등의 자료와 안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유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안전시설 보수·보완공사 관련자료
2. 화학물질(약품) 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MSDS는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우 기록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같음
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4. 기계기구·설비장비 명세서 및 이력카드, 안전방호장치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실시시기 및 주관부서, 담당자
2. 자체 또는 위탁여부 및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일수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분야별 인원

4.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분야 및 각 분야별 점검, 진단항목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
6.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체크리스트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목록
8. 기타 관련된 사항

제2장 안전점검

제5조(일상점검)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발견시 즉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결과 기록 및 미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일상점검 실시내용은 별표 1과 같고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추가·수정할 수 있다.

제6조(정기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설비기능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성능유지 여부 등을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연구실 내의 모든 인적·물적인 면에서 물리·화학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육안점검과 법정측정기기 등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측정값을 점검결과에 기입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가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체 없

이 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연구실책임자는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점검자는 해당 연구실의 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호구는 사용 후 최적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③ 정기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 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당해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 화재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종의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점검장비중 해당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특별안전점검 결과의 보고서에는 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함부위를 보고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의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밀안전진단

제8조(실시 방법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점검장비중 해당 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시 당해 연구실 책임자는 직접 또는 당해 연구실내의 기

술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관련자를 지정하여 입회시켜 정밀안전진단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진단기간 동안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규정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보호장비 등 필요한 개인보호 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공공안전 확보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은 동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을 갖추고, 진단 시 해당 분야별 점검자로 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시 각 연구실에 적합한 동법 시행령 별표4의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측정하여 분석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입한다.

⑦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검·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제9조(진단의 실시내용) ① 정밀안전진단은 외관 육안점검 및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연구실내·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평가한다.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의 보고서는 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정밀진단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①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자는 연구실별로 그 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

과가 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대상)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한 최근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
3.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검토 기준) 제2조의 검토대상에 대해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 조직 체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

다.

4.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적절하게 계상·운영되어야 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검토의 절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접수 및 검토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적합하게 실시되고, 종합 등급이 1등급인 연구실을 대상으로 제3조의 검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및 조사
3. 결과 종합 검토

제5조(검토결과의 확정 및 활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검토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우수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2) 국토교통부

(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제1조(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관리주체 등(이하 “점검·진단실시자”라 한다)이 실시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2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2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2. 영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3. 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

4.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영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영 제12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1종시설물의 정밀점검
 - 나.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
 - 다. 완공 후 30년 미만이거나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인 공동주택 정밀점검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5조2(설계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제4조(사전평가의 실시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평가의 필요여부를 미리 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는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평가토록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책임기술자 2명이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③사전평가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르며 사전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결과(정밀점검결과는 60점 미만)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사전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공단이 사장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배된 경우
 2.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침, 세부지침의 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나.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조사·분석·평가 등 기본과업의 주요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⑤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도 사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시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검·진단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

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의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지침과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세부사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의 적정성
마.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정밀점검결과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바.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사.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의 적정성
아.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2. 영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나.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3. 영 제1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①공단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의2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 1.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 2.행정 착오
- 3.FMS 등록 오류
- 4.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제5조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 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

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분야 박사·기술사자격을 갖춘 사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⑤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1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평가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8조의2제2항 하단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점검·진단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점검·진단 실시자가 불참 시 청문 없이 심의 할 수 있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점수 산정) ①평가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점수로 결정하되 심의점수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평가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의결 등) ①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시정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점검 결과는 60점) 이상인 경우

2. 시정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정밀점검결과는 50~59점)인 경우

3. 부실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정밀점검결과는 50점)미만인 경우

④평가위원회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 또는 “부실”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시정 또는 부실내용)과 시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통보) ①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14조 내지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공단(이하 “점검·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재평가는 제5조 내지 제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를 제14조 내지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는 경우 재평가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초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비밀의 엄수) 평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공단의 임원·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제21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현장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의 보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정” 또는 “부실”로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적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정밀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점검·진단기관에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점검·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리주체가 점검·진단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아니 할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 까지로 한다.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별표6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11월 30일까지로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1)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측정기관평가 표준화 연구

2008년에 수행된 이 연구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강화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러 노력들이 기울여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중독사고 및 직업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강제기준으로서의 허용기준 제도와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향상을 위한 지정측정기관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허용기준 제도와 지정측정기관평가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허용기준 설정물질의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측정기관 평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정지연 등, 2008).

연구방법으로 지정측정기관평가 표준화를 위하여 문헌조사 실시(국내·외 지정측정기관평가 관련 문헌조사 실시), 지정측정기관평가 표준화 방안 마련(현행 관련법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및 이들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 현장적용성 평가(세부지침안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50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평가 세부지침안 보완), 운영방안 도출(현장적용성 평가시 측정기관의 의견수렴과 여러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운영방안 도출)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측정기관 평가결과의 4 분야(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능력; 측정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 77개 세부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평가한 결과, 이번 조사대상 50개소의 평가결과는 총 100점 만점에 평균 78.29점(범위: 62.2점~89.0점)이었으며,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주기는 3년, 실시계획의 공고는 30일 전에, 그리고 평가결과는 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기관평가 표준화 방안 제시: 현장 적용성 평가결과를 통해 제시된 의견수렴 및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기관평가 운영방안으로 지정측정기관 평가위원회와 평가운영반을 구성하여 측정기관을 평가하는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기관평가 추진절차 및 관련 고시와 세부운영지침의 제·개정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기준 및 평가 매뉴얼 개발

2009년에 수행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기준 및 평가 매뉴얼 개발의 주된 연구목적은 특수건강진단의 시행상의 변화된 환경과 제도상의 변화로서 유해인자의 신체장기 영향을 반영하는 검사항목 보완을 통한 특수건강진단의 시행('09 시행)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사회부담화 추진(계획)에 따른 특수검진 비용지불 방식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특수건강진단 중 검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정도관리(분석, 진폐, 청력)에서 실제 특수건강진단의 과정과 실제 시행 후 사후관리 등의 특수건강진단의 포괄적인 사전, 행위 및 사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질관리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질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또는 지침과 세부 실무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김규상 등, 2009).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는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를 위한 연구내용 및 범위로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 평가지표, 2) 평가 조사 대상, 평가 조사 방법 및 기준, 3) 질관리 평가의 종류와 시행 절차, 4) 질관리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사전조사, 구조 및 과정,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5) 평가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6) 질관리를 위한 교육, 7) 현행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분석, 진폐, 청력)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제순응도 조사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책

임의사, 관독의사, 방사선 촬영검사자, 폐활량검사자, 청력검사자 및 청각판정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규제 의 인지도, 인정도 및 준수도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책임의사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인지도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평가도구의 체계를 구조, 과정 및 결과로서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것과 각 항목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산업보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기관 평가의 목적과 활용, 평가방법, 평가내용으로서 구조, 과정 및 결과, 만족도 조사, 평가기준, 평가적용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시행시 현행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와 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는지와 정도관리 결과의 부분적인 활용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인식도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된 내용과 또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와 검진기관 평가를 참조하여 기관 평가 안을 제시하였다.

3)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및 석면제품 실태연구

2013년에 수행된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및 석면제품 실태연구의 연구목적은 정부에서는 2007년에 석면제품의 사용 및 유통 등을 전면 금지하고, 2009년에 석면조사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되었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고, 석면조사기관은 양적으로 급성장하여 2013년 4월 기준 202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석면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석면 사용 제한과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석면함유물질 및 석면대체제에 대한 석면함유 유무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한 석면조사 분석기관의 석면함유 검증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석면조사 분석기관의 조사 및 분석능력을 검증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현욱 등, 2013).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국가별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국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발된 인정/평가표(안)으로 석면조사기관 중 일부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전체 기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현재 발생하는 석면조사기관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정 석면조사기관 현황 조사는 (1) 인력운영 관련현황, (2) 시설 및 장비, (3) 조사 결과의 신뢰성, (4) 공기 중 시료 측정 결과의 신뢰성, (5) 분석결과 신뢰성, (6) 결과보고서의 신뢰성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정/평가제도 운영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1) 고시에 누락되어 있는 법적 항목을 수정하여, 현재 기관에서 수행 되고 있지 않는 항목 제도화, (2) 시료 분석에 대한 관련된 모든 기록을 문서화, 분석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섬유계수, 고형시료 식별에 대한 내부정도관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 (3) 실험실에 있는 시설과 장비들은 정기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정비절차와 빈도는 문서화, (4) 고형 및 공기 중 시료에 대한 표준 시료를 마련하여 분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장구를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1)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인정제도와 같이 분석 실험실 인정평가를 위한 제도를 도입 및 국내 KOLAS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2) 현행 정도관리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PAT뿐만 아니라 기관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분석 인정 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여 능력을 향상, (3) 기준별 득점의 총 합계에 의하여 평가기관별 최종 득점을 확정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득점을 근거로 실시기관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4) 안전관리보건관리 대행기관 평가기법 및 업무 수행기준 마련 연구

2004년에 수행된 안전관리보건관리 대행기관 평가기법 및 업무 수행기준 마련 연구의 목적은 대행기관 및 사업장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평가기법 및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관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사업장 보건관

리 서비스 제공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데 두었다(최재욱 등, 2004).

방법은 국내외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유사제도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평가기법을 마련하는데 가장 적합한 적용모형을 선정함으로서 대행기관의 수행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 운영 및 실행분야로 구분하여 안전보건관리 대행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결과로 업무수행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은 품질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기존의 SHARP Index 등의 국내외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평가도구를 차용하여 연구에 부합하도록 변형하였으며 평가도구의 형태와 구성은 단순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였다. 대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대행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운영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평가는 방침 및 운영시스템, 자원관리, 대행업무지원, 분석 및 개선, 안전지원관리, 보건지원관리의 6개 영역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행사업장에 대한 평가는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대행사업장과 보건대행사업장을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전대행사업장은 문서관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관리, 자체검사, 개인보호구관리, 비상조치계획, 화재폭발 예방관리, 사고예방 및 관리, 감전재해 예방관리, 안전교육, 재해율관리, 및 사고조사의 11개 영역으로 이루어졌고, 보건관리대행사업장은 문서관리, 유해인자관리, 유해물질관리, 작업환경관리, 개인보호구관리, 건강증진관리, 건강진단관리, 질병관리, 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및 근골격계질환관리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6. 외국의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1)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법 제78조(안전위생 개선계획의 작성의 지시 등)²²⁾ 제1항은 행정구역 노동국장은 사업장의 시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재해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점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 또는 위생에 관한 개선 계획(이하 「안전위생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안전위생 개선계획을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79조(안전위생 개선계획의 준수)²³⁾에서는 제78조제1항의 사업주 및 그 노동자는 안전위생 개선계획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안전보건진단을 안전위생진단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80조(안전위생진단)²⁴⁾에서는 행정구역 노동국장은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안전 컨설턴트(consultant) 또는 노동위생 컨설턴트

22) 第九章 安全衛生改善計画等

第一節 安全衛生改善計画

(安全衛生改善計画の作成の指示等)

第七十八条 都道府県労働局長は、事業場の施設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労働災害の防止を図るため総合的な改善措置を講ず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業者に対し、当該事業場の安全又は衛生に関する改善計画(以下「安全衛生改善計画」という。)を作成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事業者は、安全衛生改善計画を作成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当該事業場に労働者の過半数で組織する労働組合があるときにおいてはその労働組合、労働者の過半数で組織する労働組合がないときにおいては労働者の過半数を代表する者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一法八七・平一一法一六〇・一部改正)

23) (安全衛生改善計画の遵守)

第七十九条 前条第一項の事業者及びその労働者は、安全衛生改善計画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24) (安全衛生診断)

第八十条 都道府県労働局長は、第七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場合において、専門的な助言を必要とするとき認めるときは、当該事業者に対し、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又は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による安全又は衛生に係る診断を受け、かつ、安全衛生改善計画の作成について、これらの者の意見を聴くべきことを勧奨することができる。

(consultant)에 의한 안전 또는 위생에 관련된 진단을 받고, 또한, 안전위생 개선계획의 작성에 대하여 이러한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권장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 제88조(계획의 신고 등)²⁵⁾에서는 안전위생 개선계획의 신고

25) (計画の届出等)

第八十八条 事業者は、当該事業場の業種及び規模が政令で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事業場に係る建設物若しくは機械等(仮設の建設物又は機械等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設置し、若しくは移転し、又はこれらの主要構造部分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計画を当該工事の開始の日の三十日前まで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労働基準監督署長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二十八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措置を講じてい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労働基準監督署長が認定した事業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2 前項の規定は、機械等で、危険若しくは有害な作業を必要とするもの、危険な場所において使用するもの又は危険若しくは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使用するものうち、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設置し、若しくは移転し、又はこれらの主要構造部分を変更しようとする事業者(同項本文の事業者を除く。)について準用する。
- 3 事業者は、建設業に属する事業の仕事のうち重大な労働災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特に大規模な仕事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開始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計画を当該仕事の開始の日の三十日前まで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厚生労働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4 事業者は、建設業その他政令で定める業種に属する事業の仕事(建設業に属する事業にあつては、前項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仕事を除く。)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開始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計画を当該仕事の開始の日の十四日前まで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労働基準監督署長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5 事業者は、第一項(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工事のうち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工事の計画、第三項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仕事の計画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仕事のうち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仕事の計画を作成するときは、当該工事に係る建設物若しくは機械等又は当該仕事から生ずる労働災害の防止を図るため、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を参画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6 前三項の規定(前項の規定のうち、第一項(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部分を除く。)は、当該仕事为数次の請負契約によつて行われる場合において、当該仕事を自ら行う発注者がいるときは当該発注者以外の事業者、当該仕事を自ら行う発注者がいないときは元請負人以外の事業者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7 労働基準監督署長は第一項(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厚生労働大臣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れぞれ当該届出に係る事項が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届出をした事業者に対し、その届出に係る工事若しくは仕事の開始を差し止め、又は当該計画を変更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8 厚生労働大臣又は労働基準監督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三項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事業者に対するものに限る。)を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命令に係る仕事の発注者(当該仕事を自ら行う者を除く。)に対し、労働災害の防止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必要な勧告又は要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정령으로 정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계된 건설물 또는 기계 등(가설의 건설물 또는 기계 등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제외)을 설치, 이전 또는 이러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계획을 해당 공사의 시작한 날의 30일 전까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점에 따라 노동기준 감독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 그 밖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점에 따라 노동기준 감독서장이 인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기계 등으로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위험한 장소에 있어 사용하는 것 또는 위험 또는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 이전, 이러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고 한 사업주(동항 본문의 사업주를 제외)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사업주는 건설업에 속한 사업의 작업 중 중대한 노동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히 대규모 작업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할 경우 그 계획을 해당 일의 시작 날의 30일 전까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점에 따라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은 사업주는 건설업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업종에 속한 사업의 일(건설업에 속한 사업은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일을 제외)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계획을 해당 일의 시작의 날 14일 전까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점에 따라 노동기준 감독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5항은 사업주는 제1(제2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된 공사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공사의 계획,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일의 계획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된 일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일의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관계된 건설물 또는 기계등 또는 해당 일으로부터 생기는 노동재해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는 자를 참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제6항은 이

전 제3항의 규정(전항의 규정 중 제1(제2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은 해당 일이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해당 일을 스스로 행한 발주자가 있는 때는 해당 발주자 이외의 사업주, 해당 일을 스스로 행한 발주자가 있지 않는 때는 원수급인 이외의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제7항은 노동기준 감독 서장은 제1항(제2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던 경우 후생노동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던 경우 각각 해당 신고에 관계된 사항이 이 법률 또는 이것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신고에 관계된 공사 또는 일의 시작을 금지하고, 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을 명한 것을 할 수 있다. 제8항은 후생노동장관 또는 노동기준 감독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주에 한함)을 한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명령에 관계된 일의 발주자(해당 일을 스스로 행한 자를 제외)에 대하여 노동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요청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제24조²⁶⁾는 계획의 신고를 해야 할 업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법제88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은 제19조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 언급한 업종의 사업장으로 전기 사용설비의 규격 용량의 합계가 300 kW 이상이 해당되며, 제2항은 법제88조제4항의 정령으로 정한 업종은 토석 채취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26) (計画の届出をすべき業種等)

第二十四条 法第八十八条第一項の政令で定める業種及び規模の事業場は、第十九条第二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業種の事業場で、電気使用設備の定格容量の合計が三百キロワット以上のものとする。

2 法第八十八条第四項の政令で定める業種は、土石採取業とする

2) ILO 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보건서비스 협약(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No. 161)에서 “산업보건서비스”는 필수적인 예방적 기능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작업의 수용과 작업과 관련한 궁극적인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이행하는데 있어 사업주, 근로자와 그들의 대표자를 조언하기 위한 책무를 위탁하는 서비스로서 정의하고 있다. 산업보건 서비스를 위한 ILO Conventions No. 161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No. 155과 같은 산업안전보건의 범세계적 최소 기준은 안전보건 활동을 격려하고 작업에서 안전보건의 합당한 기본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하는 지침을 모든 나라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찾아보고자 한다.

3) 영국

산업안전보건의 기본법은 작업장안전보건법(HSWA)이며, 하위규정으로 법령(Regulation)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인시행규칙(Approved Code of Practice) 및 강제성이 없는 지침(Guidance)등이 있다(최재욱 등, 2004).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Chapter 37)은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안전, 복지를 확보하고, 작업 활동과 연관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유해물질의 불법적 획득, 소유, 사용을 예방하며,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전향적 규정의 제정과; 산업의 학자문서서비스(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에 관한 전향적 규정의 제정; 그리고 그와 연관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업주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문서화된 안전보건 정책성명서(Health and safety policy statement)를 구비하여야 한다.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 법령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MHSW)은 1999년 12월 시행되었다.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법과 연계된 이 법령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핵심 의무를 다룬다. 이 법령은 공인시행지침(Approved Code of Practice, ACOP) 및 지침(Guidance)과 함께 공표되었다. 공인시행지침(ACOP)은 특별한 법적지위(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소에 직면할 수 있음)를 가지는 반면이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법령(MHSW)은 안전보건법 하부의 법적 의무에 부합하도록 평가를 규명하기 위한 그들의 업무수행에서의 위험을 평가하도록 사업주와 자영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업주는 안전보건 정책성명서(Health and safety policy statement)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서 드러난 중요한 요소에 대해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법령의 평가규정은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법(HSW Act)내 일반적 의무를 포함하여 모든 기타 작업장 안전보건법률에 적용된다. 공인시행지침(ACOP)은 안전보건임무의 수행을 위한 책임자(적절한 안전보건 인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훈련 및 경험을 가진 자)을 선택하는데 있어, 사업주는 컨설턴트(Regulation 7)와 같은 사람의 고용보다는 그들의 근로자 중의 유능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또는 내부와 외부 인원의 협력이 적절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다(ACOP, Regulation 7). 외부 전문가의 실수로 인해 초래되는 법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Regulation 21).

7. 산업안전보건법 상 타평가대상 기관의 평가항목의 비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항목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4가지를 근거로 비교한 결과를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4가지 평가기준(안전보건진단의 능력,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별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1) 평가대상기관의 능력

평가대상기관의 능력은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측정기관은 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7개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분석 능력이란 평가기준으로 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평가대상기관의 능력 비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1. 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15%) A: 5점, B: 3점, C: 1점				1. 건강진단·분석 능력(15%) A: 5점, B: 3점, C: 1점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평가	최고점수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평가
	1.1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의 보유 여부	2	A,B,C	10	1.1 흉부 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 위치	0.5	A, B, C
	1.2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 관리 결과	3	A,B,C	15	1.2 흉부 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	0.5	A, B, C
	1.3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3	A,B,C	15	1.3 흉부 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 상태, 해상도, 대조도	0.5	A, B, C
	1.4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검토(승	2	A,B,C	10	1.4 흉부 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 상태, 해상도, 대조도	0.5	A, B, C
					1.5 심장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	0.5	A, B, C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 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의 적정 여부				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1.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산업위생관리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 보유 여부	2	A,B,C	10	1.6 횡경막 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 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0.5	A, B, C	
	1.6 작업환경측정 종사자의 평균 측정 경력 년 수	1	A,B,C	5	1.7 횡경막 양측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0.5	A, B, C	
	1.7 분석자의 분석경력 년 수	2	A,B,C	10	1.8 추간관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0.5	A, B, C	
	평가항목: 총7개 문항	총점: 75점			1.9 폐활량 검사 표준매뉴얼 보유 여부	1.0	A, B, C	
	1.10 폐활량 검사 설문(환류)기록 파악	1.0	A, B, C		1.11 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	1.0	A, B, C	
	1.12 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	0.5	A, B, C		1.13 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	0.5	A, B, C	
	1.14 청력 2차 검사 시행	1.0	A, B, C		1.15 골도 청력검사 수행	1.0	A, B, C	
	1.16 기도 음차페 검사	1.0	A, B, C		1.17 골도 음차페 검사	1.0	A, B, C	
	1.17 골도 음차페 검사	1.0	A, B, C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 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1.18 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 지침	0.5	A, B, C
		1.19 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성과	0.5	A, B, C
		1.20 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결과	0.5	A, B, C
		1.21 내부정도관리	1.0	A, B, C
		1.22 임상정도관리 참가실적	0.5	A, B, C
		평가항목: 총 22개 문항	총점	

2) 기관의 신뢰성

기관의 신뢰성은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준의 준수라는 평가기준으로 13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정측정기관은 측정결과의 신뢰도로 19개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란 평가기준으로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평가기관 결과의 신뢰성 비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A.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100점만점)		2. 측정결과의 신뢰도(40%)				2. 건강진단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40%)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평가	최고 점수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평가
1.1.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격리) 조치	10	2.1 예비조사 실시대상의 측정계획서 작성 여부	3	A,B,C	15	2.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3.5	A, B, C
1.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설치	5	2.2 작업환경결과표상 종합의견의 질적수준	3	A,B,C	15	2.2 사전조사절차 실행여부	3.5	A, B, C
1.3.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	5	2.3 개인 노출량 측정 시 지시소음계 사용 여부	1	A,B,C	5	2.3 문진의 적정성	3.0	A, B, C
		2.4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 수행	2	A,B,C	10	2.4 이학적 검사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3.0	A, B, C
						2.5 청력검사 불일치성	3.0	A, B, C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 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1.4.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10	여부				2.6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3.0	A, B, C
1.5.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10	2.5 누적소음노출량계의 기기 환경 설정의 적정성	2	A,C	10	2.7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지침서	2.0	A, B, C
1.6.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5	2.6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의 보관 여부	2	A,B,C	10	2.8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정성	2.0	A, B, C
1.7. 석면잔재물 흘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5	2.7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3	A,B,C	15	2.9 건강진단 결과 판정방법의 적정성	3.5	A, B, C
(실내)1.8.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의 음압 유지	10	2.8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여부	3	A,B,C	15	2.10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3.5	A, B, C
(실외)1.8.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적정성		2.9 시료채취 시간 준수 여부	2	A,C	10	2.11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3.5	A, B, C
(실내)1.9.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0	2.10 시료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	1	A,B,C	5	2.12 검사항목의 적절성	3.5	A, B, C
(실외)1.9. 적절한 슬레이트 작업		2.11 지역시료채취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명시 여부	1	A,B,C	5	2.13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설명의 적절성	3.0	A, B, C
1.10.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의 적정성	10	2.12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시 채취 대장의 작성여부	3	A,B,C	15	평가항목: 총 13개 문항	총점	
1.11. 석면 컨설팅 요원 지원 실적	20	2.13 현장 공시료 포함 및 분석결과 보정 여부	2	A,B,C	10			
1.12. 감리원 선임의 적정성	-5	2.14 검량선 작성의 적정성 여부	3	A,B,C	15			
1.13. 석면배출 허용기준의 준수	-5	2.15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회수율(중금속) 실험 및 보정 수행 여부	3	A,B,C	15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 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2.16 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 보관 여부(소음 제외)	1	A,B,C	5	
	2.17 측정결과외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1	A,B,C	5	
	2.18 외부분석기관 의뢰 시 해당 문서 보관 및 결과 적정 반영 여부	2	A,B,C	10	
	2.19 시료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의 적정성 여부	2	A,B,C	10	
	평가항목: 총19개 문항		총점: 200점		

3) 기관의 시설·장비의 성능

기관의 시설·장비의 성능은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는 장비의 성능이라는 평가기준으로 8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정측정기관은 시설·장비의 성능으로 20개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역시 시설·장비의 성능이란 평가기준으로 2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평가대상기관의 시설·장비의 성능 비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B. 장비의 성능(100점 만점)		3. 시설·장비의 성능(30%)			3. 시설·장비의 성능(30%)			
2.1 장비의 보유 수량 적정성	20	3.1 측정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 지침 보유 여부	2	A,C	10	3.1 검사 및 분석장비 대장 관리	1.5	A, B, C
2.2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기의 성능	20	3.2 분석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 지침 보유 여부	2	A,C	10	3.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필름/스크린 시스템)	0.5	A, B, C
2.3 음압기록장치의 성능	10	3.3 측정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1	A,B,C	5	3.3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시설 장비의 유지보수(디지털 시스템)	0.5	A, B, C
2.4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의 성능	10	3.4 분석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1	A,B,C	5	3.4 폐활량 검사기 보유 및 유지	1.0	A, B, C
2.5 비닐시트 사양의 적정성	10	3.5 측정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	1	A,B,C	5	3.5 폐활량 검사기 보정	1.5	A, B, C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 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2.6. 작업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10	지의 적절성				3.6 폐활량 검사기 감염예방 조치	1.5	A, B, C
2.7. 장비별 매뉴얼, 이력관리 등 기록유지	10	3.6 분석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1	A,B,C	5	3.7 폐활량 검사시 일회용품 사용	1.0	A, B, C
2.8. 장비·보호구의 청결상태	10	3.7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2	A,B,C	10	3.8 폐활량 검사실	1.5	A, B, C
		3.8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2	A,B,C	10	3.9 청력 검사실 및 부스	1.5	A, B, C
		3.9 법정 필수 장비(전자저울 제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2	A,B,C	10	3.10 청력 검사기 보정점검	1.5	A, B, C
		3.10 전자저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2	A,B,C	10	3.11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매뉴얼	1.5	A, B, C
		3.11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2	A,B,C	10	3.12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대장	1.0	A, B, C
		3.12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1	A,B,C	5	3.13 진단검사 시료보관 및 운반에 관한 지침서 보유	1.5	A, B, C
		3.13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1	A,B,C	5	3.14 진단검사 시료저장의 적절성	1.0	A, B, C
		3.14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2	A,B,C	10	3.15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1.5	A, B, C
		3.15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1	A,B,C	5	3.16 폐기물 처리	1.0	A, B, C
		3.16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2	A,B,C	10	3.17 비상용 샤워 및 세안설비 설치	1.5	A, C
						3.18 가스용기 전도방지 장치 및 저장	1.0	A, B, C
						3.19 분석용 시약 보관상태	1.5	A, B, C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 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적정성					3.20 분석장비 국소배기장치	1.0	A, B, C
3.17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2	A,B,C	10		3.21 보호용구 구비	1.5	A, B, C
3.18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1	A,B,C	5		3.22 냉장보관 설비	1.0	A, B, C
3.19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1	A,B,C	5		3.23 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	1.0	A, B, C
3.20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1	A,B,C	5		3.24 저울 검정 및 교정	2.0	A, B, C
평가항목: 총20개 문항	총점: 150점			평가항목: 총 24개 문항	총점		

4) 그 밖의 제반사항

그 밖의 제반사항이란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을 의미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의 경우도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11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정측정기관도 평가기준은 동일하며 13개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고 특수건강진단기관도 동일한 기준으로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 평가대상기관의 그 밖의 제반사항 비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C.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100점 만점)		4. 그 밖의 제반사항(15%)				4. 교육이수 등 그 밖의 제반사항(15%)		
3.1. 등록업체의 전문기술 능력	20	4.1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교육·훈련 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1	A,B,C	5	4.1 특검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2.0	A, B, C
3.2. 등록된 인력의 실제 작업현장 관리 참여도	20	4.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1	A,B,C	5	4.2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	1.5	A, B, C
		4.3 작업환경측정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2	A,B,C	10	4.3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인력 제외)	1.5	A, B, C
		4.4 분석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	A,B,C	10	4.4 내부 직무교육 실시	1.0	A, B, C
						4.5 학술대회 참여정도	1.0	A, B, C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 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3.3. 등록된 인력의 석면 전문교육 이수	20	전문교육 이수 여부				4.6 특수건강진단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1.5	A, B, C
3.4.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석면 전문교육 이수	10	4.5 측정 및 분석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0.5	A,C	2.5	4.7 직원신분 공개	0.5	A, B, C
3.5. 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10	4.6 측정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 구실적	0.5	A,C	2.5	4.8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0.5	A, B, C
3.6. 홈페이지 보유 및 석면정보 제공	10	4.7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	0.5	A,C	2.5	4.9 특검기관 소속인력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1.0	A, B, C
3.7. 인력·장비(자산) 및 작업 관련 내용의 전산화	10	4.8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각종 학술 대회 참여 실적	1	A,B,C	5	4.10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송부의 적정성	1.0	A, B, C
D.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 100점 만점		4.9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1	A,C	5	4.11 검체의 외부의뢰 체계 구축	1.0	A, B, C
		4.10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여부	2	A,B,C	10	4.12 문진결과 기록보관	1.0	A, B, C
		4.11 시약·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0.5	A,B,C	2.5	4.13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 지원	0.5	A, B, C
		4.12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1	A,B,C	5	4.14 수검자 사생활 보호	1.0	A, B, C
		4.13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2	A,B,C	10	평가항목: 총 14개 문항	총점	
4.1.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 재해발생	30							
4.2. 고용노동부 행정처분 등의 경험	20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 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4.3. 석면해체·제거작업 자체 매뉴얼의 보유	20	송부기한 준수 여부			
4.4.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등 서류 보존	30	평가항목: 총13개 문항	총점: 7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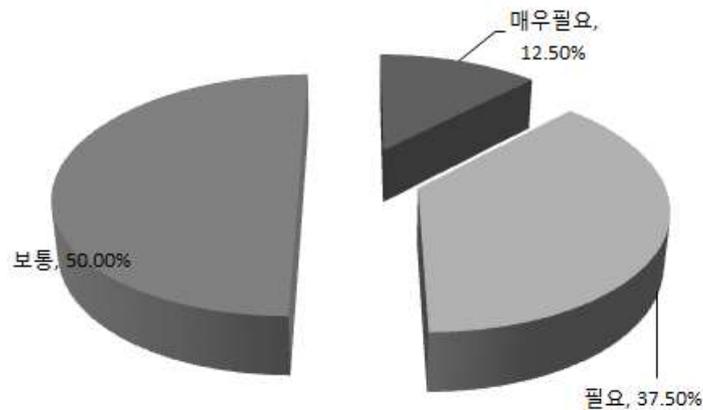
8. 안전·보건진단기관 방문평가 결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방문하여 8개의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 등 기초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였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일반

(1).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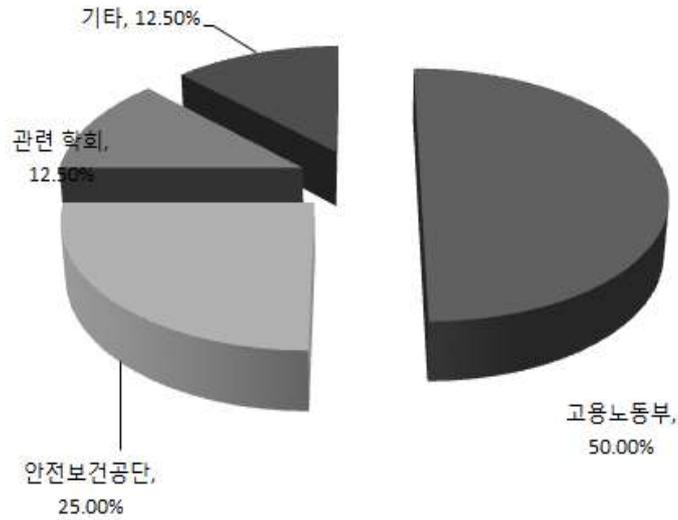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평가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필요하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그림 3-1]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중요성

(2).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수행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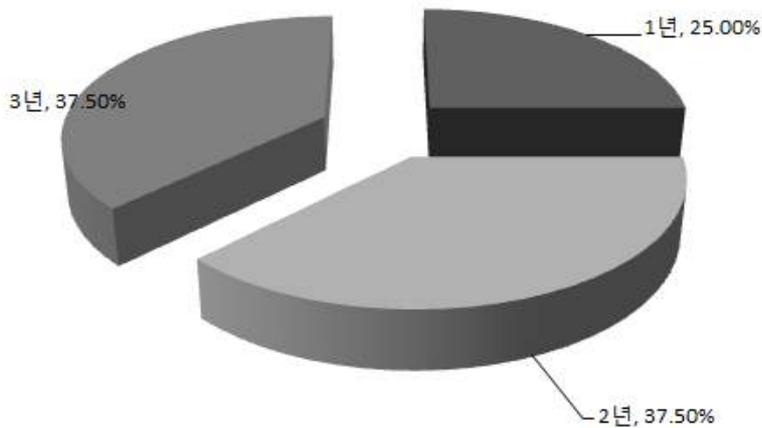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는 수행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고용노동부’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 ‘안전보건공단’ 25.0%, ‘관련 학회’가 12.5%이었다.



[그림 3-2]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수행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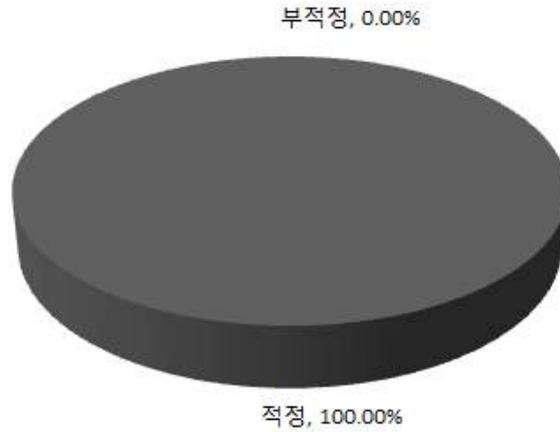
(3).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주기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주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응답은 ‘2년과 3년’이 각각 37.5%로 가장 많았고 ‘1년’도 25.0%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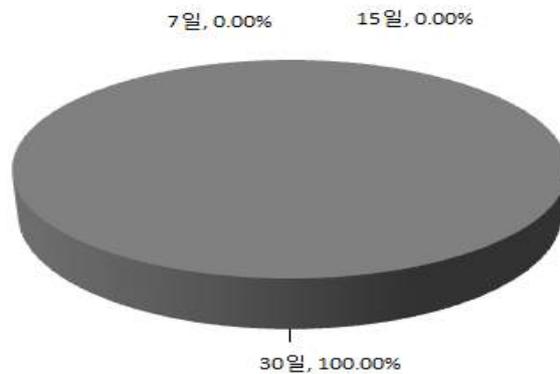
[그림 3-3]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주기

(4).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를 위한 위원회 또는 평가반의 구성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를 위한 위원회 또는 평가반의 구성이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100% 타당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4]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를 위한 위원회 또는 평가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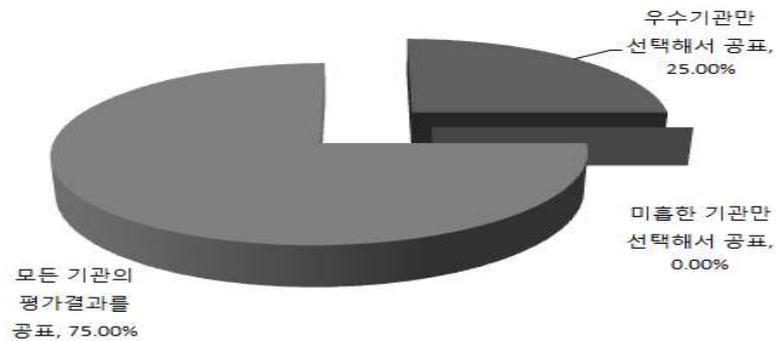
(5).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의 공고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의 공고 기간은 '30일'을 모든 조사대상 기
 관에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5]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의 공고

(6).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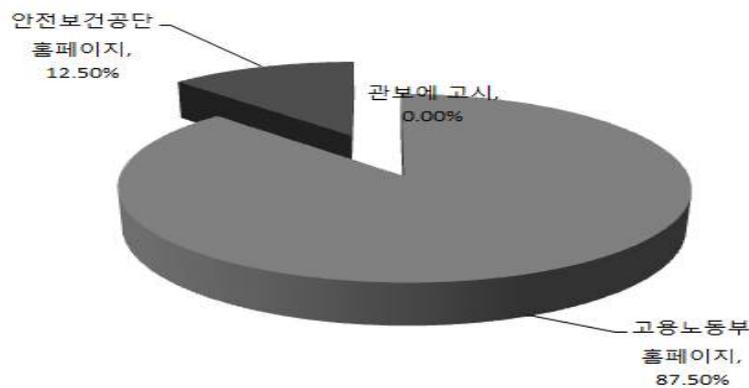
현행 규정상 안전보건서비스기관은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있으며,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할 경우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당한지에 대한 응답결과 ‘모든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표’가 7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우수기관만 공표’하자는 의견이 25.0%이었다.



[그림 3-6]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범위

(7).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공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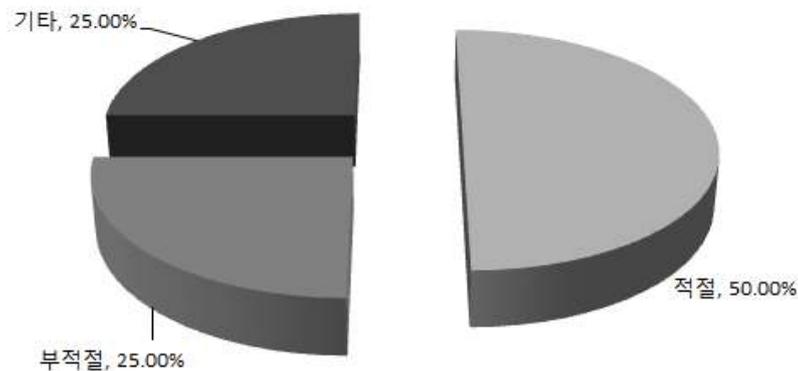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어떤 공표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8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가 12.5%로 나타났다.



[그림 3-7]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공표방법

(8).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의 조치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결과 “미흡”으로 분류된 기관의 경우 진단과 관련된 사업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다’가 50%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과 기타’가 각각 25.0%로 나타났다. 기타 사항으로는 1차 경고 후 제한, 교육으로 대체가 있었다.



[그림 3-8]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의 조치

2) 안전·보건진단기관 현황

(1). 기관소재지

총 8개의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소재지는 5개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2개소는 경기지역에 1개소는 경상지역에 기관이 지정되어 있었다.

(2). 지정현황

일반안전진단기관이 6개소이었고, 보건진단기관이 2개소이었다. 이 중 1개소는 일반안전진단기관과 건설안전진단기관을 동시에 지정받고 있었다. 중복 응답을 포함하여 6개소의 일반안전진단기관 중 5개소가 중점분야로 기계를 응답 하였으며 3개소는 전기, 3개소는 화공으로 응답하였다.

(3). 운영현황

안전보건진단의 사업실적으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의 경우 5개소가 응답하였고 1개소는 아직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2013년 기준 평균 사업실적은 60.6개소이었으며, 보건진단기관의 2개소는 평균 사업실적이 38.5개소로 응답하였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분 경험이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안전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사업의 종류로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명령 후 기관 신청이 62.5%로 가장 많았고, 자율적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신청은 7.5%, 산업안전보건법 이외 법령에 의해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는 30%를 차지하였다. 보건진단기관은 98%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명령 후 기관에 신청하는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4). 인력현황

기술사의 경우 일반안전진단기관은 1명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3개소이었고, 2명이 1개소, 4명이 있는 기관 1개소가 있었으며, 기관당 평균 기술사는 2명으로 조사되었다. 지도사의 경우 1명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2개소가 있었다.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2개소에서 산업위생관리기술사 5명과 2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안전진단기관의 1개 기관당 평균 산업안전기사 보유율은 4.7명(2명~12명), 산업안전산업기사는 0.17명(1개소 1명), 기계기사의 보유율은 1.17명(0명~2명), 기계산업기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기사의 경우 1개소 평균 2.16명(1명~8명), 화공기사는 1.67명(1명~5명), 건설기사는 1.33명(0명~5명) 및 건설산업기사 0.33명이었다.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산업위생관리기사가 각각 6명과 5명이 있었고 1개 기관에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3) 안전·보건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1). 일반안전진단기관

일반안전진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균장비는 회전속도측정기의 경우 4.3대,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3.7대, 재료강도시험기 1대, 진동측정기 4.2대, 표준압력계 1대, 절연저항측정기 6대, 만능회로측정기 8.7대, 산업용내시경 및 경도측정기 1.2대, 산소농도측정기 3.5대, 두께측정기 6.7대, 가스농도측정기 3.3대, 가연성가스 검지관 및 수압시험기 1대, 접지저항측정기 3.7대, 계전기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는 각각 1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 일반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및 중요 정도

장비명	보유현황(대수)	중요정도		
	평균(범위)	중요	보통	미흡
회전속도측정기	4.33대(1대~20대)	1	5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3.67대(1대~3대)	2	3	1
재료강도시험기	1.00대(1대~1대)	1	1	4
진동측정기	4.17대(1대~20대)	1	3	2
표준압력계	1.00대(1대~1대)	1	4	1
절연저항측정기	6.00대(1대~30대)	5	1	
만능회로측정기	8.67대(1대~45대)	3	3	
산업용내시경	1.17대(1대~2대)	2	1	3
경도측정기	1.17대(1대~2대)	2	3	1
산소농도측정기	3.50대(1대~15대)	5	1	
두께측정기	6.67대(1대~35대)	4	2	
가스농도측정기	3.33대(1대~15대)	5	1	
가연성가스 검지관	1.00대(1대~1대)	4	2	
수압시험기	1.00대(1대~1대)	1	2	3
접지저항측정기	3.67대(1대~17대)	4	2	
계전기기시험기	1.00대(1대~1대)	1	2	3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00대(1대~1대)	1	5	
정전전위측정기	1.00대(1대~1대)	1	4	1
차압측정기	1.00대(1대~1대)	1	2	3

보건진단기관이 법적으로 보유해야 할 필수 장비는 총 7종이 해당된다.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는 평균 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검지관 및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는 평균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진측정기는 평균 2.3대,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는 평균 4대,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 측정 기기는 평균 1.3대 이었고, 산소측정기와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는 모든 기관이 1대씩 보유하고 있었다.

<표 3-6> 보건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및 중요 정도

장비명	보유현황 (대수)	중요정도		
	평균(범위)	중요	보통	미흡
시료 포집기 ²⁷⁾	10대(10대)	1	1	
측정기 세트 ²⁸⁾	1대~3대	1	1	
분진측정기	1대	1	1	
소음측정계 ²⁹⁾	1대~12대	1	1	
광선측정기기 ³⁰⁾	1대~3대	2		
산소측정기	1대~2대	2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1대	1	1	
원자흡광광도계*	1대	1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대	1	1	
분광광도계*	1대	1	1	
현미경*	1대	1	1	
저울*	1대	1	1	
순수제조기*	1대	1	1	
건조기*	1대	1	1	
냉장고 및 냉동고*	1대	1	1	
드래프트 챔버*	1대	1	1	

장비명	보유현황 (대수)	중요정도		
	평균(범위)	중요	보통	미흡
화학실험대*	1대~12대	1	1	
배액처리설비*	1대	1	1	
국소배기시험장비 ³¹⁾	1대	2		

* 지정측정기관과 특수건강진단기관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는 평균 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재료강도시험기 및 진동측정기는 평균 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3-7> 건설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및 중요 정도

장비명	보유현황 (대수)	중요정도		
	평균(범위)	중요	보통	미흡
가스농도측정기	2대	1		
산소농도측정기	2대	1		
재료강도시험기	1대	1		
진동측정기	1대	1		

4) 안전·보건진단기관 시설 현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사무실은 8개 기관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37.17평이었다. 또한 상담실은 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4.62평, 실험실은 3개 기관 보유에 평균 면적은 8.08평이었다.

27)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28) 검지관 및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29)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30) 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31)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5)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기준 중요정도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기준을 우수한 인력, 보유 시설, 장비의 성능, 기관의 진단능력, 진단과정의 합리성, 보유인력의 교육 이수, 능력개발로 구분하여 중요한 정도에 대한 질문결과 ‘우수한 인력과 기관의 진단능력’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진단과정의 합리성’과 ‘보유인력의 교육 이수, 능력개발’이 37.5%를 보였다.

<표 3-8>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기준 중요정도

평가기준	중요 정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 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우수한 인력	75.0%	25.0%	0.00%	0.00%	0.00%
보유 시설	12.5%	25.0%	37.5%	25.0%	0.00%
장비의 성능	12.5%	37.5%	50.0%	0.00%	0.00%
기관의 진단능력	75.0%	25.0%	0.00%	0.00%	0.00%
진단과정의 합리성	37.5%	62.5%	0.00%	0.00%	0.00%
보유인력의 교육 이수, 능력개발	37.5%	62.5%	0.00%	0.00%	0.00%

6) 안전·보건진단 내용의 중요 정도

(1). 일반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 내용의 중요정도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의 경우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과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건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66.67%가 응답하였다.

<표 3-9> 일반안전진단내용의 중요 정도

진단내용	중요 정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 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50.0%	33.0%	16.67%	0.00%	0.00%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16.67%	66.67%	16.67%	0.00%	0.00%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4-1.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33.33%	50.00%	16.67%	0.00%	0.00%
4-2.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66.67%	16.67%	16.67%	0.00%	0.00%
4-3.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33.33%	33.33%	33.33%	0.00%	0.00%
4-4.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50.00%	33.33%	16.67%	0.00%	0.00%
4-5.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건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66.67%	16.67%	16.67%	0.00%	0.00%
5. 보호구, 안전장비의 적정성	33.33%	33.33%	33.33%	0.00%	0.00%

(2). 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 내용의 중요정도는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

고 100%로 높게 평가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적절성(겸직 여부) 및 작업환경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표 3-10> 보건진단내용의 중요 정도

진단내용	중요 정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 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100.0%	0.00%	0.00%	0.00%	0.00%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100.0%	0.00%	0.00%	0.00%	0.00%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4-6.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0.0%	50.0%	0.00%	0.00%	0.00%
5. 보호구,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 시설의 적정성	50.0%	50.0%	0.00%	0.00%	0.00%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100.0%	0.00%	0.00%	0.00%	0.00%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0.0%	0.00%	0.00%	0.00%	0.00%

(3). 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 내용의 중요정도는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경우 1개 기관이 응답하였는데 모든 항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11> 건설안전진단내용의 중요 정도

진단내용	중요 정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 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100.0%	0.00%	0.00%	0.00%	0.00%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100.0%	0.00%	0.00%	0.00%	0.00%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4-1.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100.0%	0.00%	0.00%	0.00%	0.00%
4-2.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100.0%	0.00%	0.00%	0.00%	0.00%
4-3.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100.0%	0.00%	0.00%	0.00%	0.00%
4-4.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100.0%	0.00%	0.00%	0.00%	0.00%
4-5.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건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100.0%	0.00%	0.00%	0.00%	0.00%
5. 보호구, 안전장비 등의 적정성	100.0%	0.00%	0.00%	0.00%	0.00%

9.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세부지침안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기준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평가 기준·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9항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와 평가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제10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와 평가 기준을 비교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 수준 평가를 위하여 4가지 평가기준인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 인력의 교육 이수·능력 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 사항』을 설정하였다.

이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항목 개발을 위하여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비교한 석면해체·제거 안정성평가도구,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도구, 특수건강진단평가도구를 근간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기초조사에서 안전보건진단 내용의 중요 정도에 대한 내용과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확보한 일반안전진단결과보고서, 보건진단결과보고서, 건설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1차 평가안으로 구성하였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과 관련된 기본 사항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하여 기본사항으로는 크게 인원현황과 보유장비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인원현황은 일반안전진단기관의 경우 산업안전관리 기술사(기계, 화공 및 전기),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기계 및 산업기사,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화공기사 및 산업기사를 파악하였고, 보건진단기관은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및 산업기사, 분석전담자를 확인하였다. 건설안전진단기관은 건설안전 분야

안전기술사, 건설안전 분야 안전 지도사,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보유 장비현황은 일반안전진단기관의 경우 회전속도측정기, 자동 탐상비파괴 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준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측정기, 산업용내시경, 경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두께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가연성가스 검지관, 수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계전기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 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의 보유 대수를 확인하였고, 보건진단기관은 지정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되지 않는 장비로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검지관 및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분진측정기,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 유해광선 측정기기, 산소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를 각각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였다.

2)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평가 항목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평가 항목은 안전진단기관 9문항, 보건진단기관 11문항, 건설안전진단기관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번 항목부터 (9)번 항목은 3개의 안전·보건진단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10) 및 (11) 항목은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였다. 모든 항목은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최초 기관 종사자의 평균 경력년수를 진단인력(분석인력 제외)와 분석인력을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나 다른 진단기관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10)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 및 (11)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항목의 경우 지정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동시에 지정을 받지 않은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보건진단 기관별 평가항목의 세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표 3-12> 안전보건진단의 능력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안전 진단	보건 진단	건설 안전	비고
1)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	○	○	○	
2) 안전보건진단 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	○	○	
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산업안전위생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보유 여부	○	○	○	
4) 안전보건진단 종사자의 평균 경력 년 수	○	○	○	
5) 안전보건진단시 외부인력의 전문성 여부	○	○	○	
6)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시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	○	○	
7) 안전보건진단결과 고객만족도 또는 민원제기 여부	○	○	○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등 인정기관에서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	○	○	
9)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 일수 적정성 여부	○	○	○	
10)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		○		
11)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		

(1).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제1장 총칙, 제2장 진단절차, 제4장 보칙, [붙임 3] 최소 진단일수 기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³²⁾, [붙임 4]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작성요령 등의 포함 여부를 조

32)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사하여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모든 내용의 문서화한 경우, “보통”은 시행지침의 50%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미흡”은 시행지침의 50% 미만을 포함하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 안전보건진단 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진단 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항목은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진단결과표의 문서 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단계별 확인(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항상 작성자, 검토자가 확인하는 경우, “보통”은 가끔 항상 작성자, 검토자가 확인하는 경우, “미흡”은 항상 작성자, 검토자가 확인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산업안전위생기술사 및 지도사 보유 여부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자인 기술사 및 지도사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포함)를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보통”은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1명 보유한 경우, “미흡”은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4). 안전보건진단 종사자의 평균 경력 년 수

평가방법은 건설안전진단을 책임지는 종사자의 평균 경력년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보통”은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미흡”은 경력 5년 미만인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5). 안전보건진단시 외부인력의 전문성 여부

평가방법은 외부인력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7년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건설안전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건설안전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적절한 자격인 경우, “보통”은 1명이 부적절한 자격인 경우, “미흡”은 2명이 부적절한 자격의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6).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시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평가방법으로는 시정지시 등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 “보통”은 경고 또는 시정지시 경험이 있는 경우, “미흡”은 업무정지 경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7). 안전보건진단결과 고객만족도 또는 민원제기 여부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실시한 경우 근거자료를 조사(고객만족도라 함은 건설안전진단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만족도등을 조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2년 이내에 실시한 적이 있고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보통”은 2년 이전에 실시한 적이 있으나 민원제기가 발생한 경우, “미흡”은 실시한 적이 없고 민원제기도 발생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인정기관에서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평가방법 로는 표창실적이 있는 경우,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이며, 평가기준

으로 “우수”는 2회 이상, “보통”은 1회, “미흡”은 실적이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9).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 일수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은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를 참여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충족, “보통”은 1회 미충족, “미흡”은 2회 이상 미충족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0).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의 평가(고용노동부부고시) 제57조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적합(면제 포함)인 경우, “보통”은 1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미흡”은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1).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도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진단기관 자체적인 분석 정도관리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그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측정기관으로 동시 지정받은 경우 측정기관 내부규정도 인정가능하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분석에 대한 정도관리 내부규정이 적절하게 수립·시행되는 경우, “보통”은 정도관리 내부규정의 내용이 실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실행이 확인된 경우, “미흡”은 정도관리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3)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평가 항목은 안전진단기관 16문항, 보건진단기관 18문항, 건설안전진단기관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번 항목부터 (16)번 항목까지의 안전진단기관과 건설안전진단기관은 평가항목이 유사하나 (17)항목부터 (25) 항목까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이며,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든 항목은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진단 기관별 평가항목의 세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는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하는 부분이다.

<표 3-13>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항목 구분

평가항목	안전 진단	보건 진단	건설 안전	비고
1) 안전보건진단 개요 서술의 적정성 여부	○	○	○	
2) 안전보건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	○	○	○	
3)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	○	○	○	
4)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	○	○	○	
5)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	○	○	○	
6)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	○	○	○	
7)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	○	○	○	
8)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술의 질적수준 여부	○		○	
9)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수준 여부	○		○	
10)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수준 여부	○		○	
11)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의 질적수준 여부	○		○	
12)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수준 여부	○		○	

평가항목	안전 진단	보건 진단	건설 안전	비고
13)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	○	○	○	
14)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	○		○	
15)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	○	○	○	
16)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		○	
1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등의 확인 여부		○		
18)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개선방안의 질적수준 여부		○		
19)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기술 여부		○		
20)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의 기록 적절성 여부		○		
21) 근로자 건강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		
2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확인 및 기술 여부		○		
23)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		
24) 보건규칙 4대 프로그램(대상 사업장에 한함) 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행 상태 여부		○		
25)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상 사업장에 한함)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		

(1). 안전보건진단 개요 서술의 적정성 여부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진단개요에 배경 및 목적, 사업장 개요, 진단 현황, 진단결과, 주요 공정 흐름도 등의 제시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포함하는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 안전보건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

안전보건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안전진단 총평에 요약문, 기술적 사항, 관리적 사항의 포함여부 및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는 “우수”는 모두 포함하고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3).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재해율, 재해별 원인이 포함된 현황(내용)의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포함하는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4).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계층별 역할 및 활동이 서술되어 있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와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 및 건의사항 포함 여부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계층별 역할 및 활동, 관련 법령, 문제점, 건의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5).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모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총칙,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보칙) 등의 내용 포함 여부를 안전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6).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현황, 계층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를 안전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는 “우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7).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관련 규정기술과 안전보건점검

실시, 순회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도급조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술된 경우, “보통”은 1개 이상의 사항이 누락되어 기술된 경우, “미흡”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8).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³³⁾)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당해 사업장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모두 조사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9).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³⁴⁾)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

33)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제27조 제2항 관련) :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치, 14. 향타기, 15. 향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34)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 기계·기구 및 설비 :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에 대한 기술 및 질적 사항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가 모두 조사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0).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³⁵⁾)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적 수준에 대한 사항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가 모두 조사(검사주기, 보유대수, 실시대수, 미 실시 대수 등)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1).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와 관련하여 제출대상인 금속이나 그

하는 것,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5) 제29조(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의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 제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 대상 기계·기구의 대상 여부의 기술 및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2).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 수준 여부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안전작업허가서 허가권자 자격, 안전작업허가서 연장,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일반 안전작업허가서, 작업허가서 보관 등에 대한 사항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3).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당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주기, 위험성평가의 위험등급,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서 양식 등의 내용에 대한 기술과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기술되어 있고 개선의견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1개

이상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사항 기술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4).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당해 사업장의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한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하여 모두 적정하게 기술된 경우, “보통”은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게 기술된 경우, “미흡”은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의 기술이 누락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5).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건설안전진단결과는 공학적·관리적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보통”은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미흡”은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등의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6).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

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및 그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보통”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미흡”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등의 확인 여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등의 확인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한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의 확인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가 기술된 경우, “보통”은 5개 미만 물질에 대하여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가 누락된 경우, “미흡”은 5개 이상 물질에 대하여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가 누락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8).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 여부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 면속도, 기기 이상소음, 베어링 과열 상태, 공기정화시설 테스트, 배풍기 절연저항, 배풍기 회전속도의 기술여부와 국소배기장치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조사대상, 측정기구 및 방법, 평가 및 조치사항 모두 포함하고 있고 국소배기장치 현황 및 개선방안기술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

하도록 하였다.

(19).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기술 여부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기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당해 사업장 주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MSDS 목록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여부,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MSDS가 목록화되어 있고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0).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의 기록 적절성 여부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의 기록 적절성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현황에 대하여 실시일자, 실시기관, 측정대상물질명(특수건강진단대상 여부), 사용공정, 월간 사용량(kg/월),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현황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1). 근로자 건강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근로자 건강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현황,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특검대상물질명, 사용공정, 사용량(kg/월)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

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확인 및 기술 여부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확인 및 기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현황, 건의사항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현황과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현황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현황과 건의사항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3).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허용기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로 구분 및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건의)사항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이 적절한 경우, “보통”은 5개 미만 화학물질이 누락되거나 모든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사항 기술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5개 이상 화학물질이 누락되거나 모든 항목으로 구분되지 있지 않고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사항 기술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4). 보건규칙 4대 프로그램(대상 사업장에 한함) 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행 상태 여부

보건규칙 4대 프로그램(대상 사업장에 한함) 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행 상태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청력보존프로그램,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대상 및 해당되는 경우 기술의 적정성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4대 프로그램 모두 기술되어 있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프로그램이 누락되거나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누락되거나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5).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상 사업장에 한함)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상 사업장에 한함)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보통”은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미흡”은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등의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4) 시설·장비의 성능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평가 항목은 안전진단기관 9문항, 보건진단기관 19문항, 건설안전진단기관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의 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은 평가항목이 유사하나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10)번 항목부터 (19)번 항목은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생략이 가능하지만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11개의 항목은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된다. 시설·장비의 성능을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든 항목은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진단 기관별 평가항목의 세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표 3-14> 시설·장비의 성능 항목 구분

평가항목	안전 진단	보건 진단	건설 안전	비고
1)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	○	○	
2)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	○	○	
3)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	○	○	
4)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	○	○	
5)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	○	○	
6)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	○	○	
7)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비하여야 할 필수 장비 이외의 측정 및 분석장비 보유 여부	○	○	○	
8)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사무실 등 공간적정 여부	○	○	○	
9)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	○	○	

평가항목	안전 진단	보건 진단	건설 안전	비고
10)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		지정측정기관 동시지정 생략가능
11)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		"
12)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		"
13)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		"
14)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		"
15)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		"
16)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		"
17)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		"
18)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		"
19)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		"

(1).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³⁶⁾, 보건진단기관³⁷⁾ 및 건설안전진단기관³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모든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하여 문서화된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와 유지관리지침에는 관리조직, 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및 관리, 검·교정, 불용결정, 손상실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36) 일반안전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 : 회전속도측정기,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준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측정기, 산업용내시경, 경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두께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가연성가스 검지관, 수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계전기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
 37) 보건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공동활용 제외) :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검지관 및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분진측정기,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산소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38) 건설안전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 :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있는 경우, “보통”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다소 미흡한 경우, “미흡”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법정 필수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대장에 명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보통”은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일부 지정된 경우, “미흡”은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3).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 방법으로는 주요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목록의 작성·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 “보통”은 일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부적정한 경우, “미흡”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4).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³⁹⁾, 보건진단기관⁴⁰⁾ 및 건설안전진단기관⁴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

39) ①산소농도측정기, ②가스농도측정기

40) ①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②산소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1)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은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를, 보건진단기관은 산소농도측정기, 열선풍속계, 조도계, WBGT 등 직독식 장비를, 건설안전진단기관은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등의 직독식 장비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 경우, “보통”은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미흡”은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부적정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5).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일반안전진단기관의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두께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는 반드시 검·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전속도측정기,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준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측정기, 산업용내시경, 경도측정기, 가연성가스 검지관, 수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계전기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는 선택사항이다.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유량계⁴²⁾(공기시료채취기 Calibrator), 표준소음발생기(누적소음노출량계 Calibrator), 열선풍속계, 전자저울(또는 표준 분동)을, 건설안전진단기관은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수로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는 선택으로 각 안전·보건진단기관별로 법정 필수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 수립 및 문서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일부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미흡”은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42) 지정측정기관과 공동 활용 가능 장비

(6).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역시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대상 법적 필수 장비의 정기적인 검·교정이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대상 장비 전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보통”은 대상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미흡”은 검·교정 실시가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7).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비하여야 할 필수 장비 이외의 장비 보유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비하여야 할 필수 장비 이외의 장비 보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⁴³⁾, 보건진단기관⁴⁴⁾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보유장비를 모두 직접 확인(공동 기기 실습실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불인정)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수별로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8).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사무실 등 공간적정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사무실 등 공간적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은 사무실, 장비실 공간 적정 여부를 보건진단기관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43) ① 초음파두께측정기, ② 클램프미터, ③ 소음측정기, ④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⑤ 조도계, ⑥ 토크게이지, ⑦ 검전기(저압용·고압용·특고압용), ⑧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⑨ 위 기능에 상응하는 기타장비

44) ①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또는 LC/MS, ② X-선 회절기(XRD), ③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또는 IR/MS, ④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또는 IC/MS, ⑤ GC-질량분석기(GC/MS), ⑥ 석면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부속품(PCM, PLM, EM 등), ⑦ 유도결합프라스마(ICP) 또는 ICP/MS, ⑧ 진동측정이 가능한 주파수분석기 또는 방사선 측정장비, ⑨ 위 기능에 상응하는 기타장비

공간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별도의 독립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보통”은 별도의 독립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른 공간으로 병행되어 사용하는 경우, “미흡”은 현실적으로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9).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현장 진단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용구(안전모, 보안경, 안전대, 안전화,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1개 보호용구가 미흡한 경우, “미흡”은 1개 이상의 보호용구가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0).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실험실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을 보유하고, 정기적 점검 상태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은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미흡”은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1).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분석 장비별로 실험실용 후드가 설치되어야 하며, 분석실 내부

흡후드 제어풍속의 적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후드가 설치되고 적정하게 배기되는 경우, “보통”은 후드는 있으나 배기상태가 부적정한 경우, “미흡”은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2).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분석 중 발생하는 배액(폐액) 처리를 위한 설비 구비 및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배액처리 설비 및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보통”은 배액처리 설비는 있으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미흡”은 배액처리설비와 관리대장도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3).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설비를 직접 확인한 후 기록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중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미흡”은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4).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설비를 직접 확인하여 조치여부를 판단한 후 기록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가스용기에 대해 전도방지 조치를 한 경우, “보통”은 가스용기에 대해 전도방지를 일부 조치한 경우, “미흡”은 가스용기에 대해 전도방지를 전혀 조치하지 않은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5).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은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분석용 시약장에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시약을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에 보관하는 경우, “보통”은 시약을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에 보관하는 경우, “미흡”은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없이 실험실내에 보관하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6).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실험실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보호용구(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유기용제용 장갑, 실험복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1개 보호용구가 미흡한 경우, “미흡”은 1개 이상의 보호용구가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7).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시료보관용 냉장실 및 냉동실에는 시료 이외의 것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냉장실 및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보통”은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미흡”은 냉장실과 냉동실 모두에 시료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8).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실험실 내는 흡연 및 음식물 취식 여부와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표지 적정 부착되고 이행되는 경우, “보통”은 금지 표지는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가 이행되는 경우, “미흡”은 흡연 또는 음식물 취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9).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며,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실험실 내 유해물질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실험실 내 유해물질 보관 및 취급 장소에 경고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 “보통”은 실험실 내 경고표지 부착이 일부 누락된 경우, “미흡”은 실험실 내 경고표지가 전혀 부착되지 않은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5)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의 평가항목은 최초 안전진단기관 13문항, 보건진단기관 14문항, 건설안전진단기관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진단인력(분석인력 제외)와 분석인력을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나 다른 진단기관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목 문항을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적용하도록 하

였고, 모든 항목은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표 3-15>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항목 구분

평가항목	안전 진단	보건 진단	건설 안전	비고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	○	○	
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	○	○	
3)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원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	○	○	○	
4)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	○	○	
5)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	○	○	
6)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	○	○	
7)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	○	○	○	
8)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	○	○	○	
9)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	○	○	
10)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	○	○	
11) 안전보건진단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	○	○	
12)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 송부기한 준수 여부	○	○	○	
13) 안전보건진단 시작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	○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는 일반 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진단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의 문서 수립 및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이 일부 누락된 경우, “미흡”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 “보통”은 하나만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미흡”은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3). 비정규직⁴⁵⁾ 직원에게도 정규직원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원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확인(전문교육이라 함은 안전보건 관련 학회 참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교육,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1년 2회 이상인 경우 또는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명확한 확인 필요), “보통”은 1년에 1회, “미흡”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45)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로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단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파트 타임 근로자 등)▶파견 근로자 : 인력파견(공급) 업체에 고용된 뒤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파견돼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

(4).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모든 안전보건진단 인력은 2년에 1회 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진단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통”은 일부 진단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미흡”은 진단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5).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관련된 문서화 여부(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책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진단요원 등에 대하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적 배려, 대학 등의 강의 활동 지원, 학원 수강시 금전적 지원 등을 포괄하여 판단)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보통”은 기관장이 1건이라도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미흡”은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6).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은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학회지 및 학술대회 연제집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기관

분야별 인력의 연구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연구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보통”은 연구실적이 1건 있는 경우, “미흡”은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7).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

전문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은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전문 인력의 상위학위 취득 또는 업무관련 자격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자기개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보통”은 자기개발 실적이 1건인 경우, “미흡”은 자기개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8).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은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안전보건 분야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참여 실적(직무교육 제외)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전문인력 모두 1년에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보통”은 전문인력 참여비율이 60~40%인 경우, “미흡”은 40% 미만인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9).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안전·보건진단기관 분야별 내부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1회 운영한 경우, “미흡”은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0).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대장 등의 작성·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보통”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미흡”은 전혀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1). 안전보건진단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안전보건진단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의 보존기한(3년) 명시 및 상시 열람이 가능한 환경 내 보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적정한 경우, “보통”은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미흡”은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2).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 송부기한⁴⁶⁾ 준수 여부

46)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9(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 송부기한 준수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진단결과의 보고)에 따라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항상 준수하는 경우, “보통”은 준수하지 못한 1건이 확인된 경우, “미흡”은 1건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3). 안전보건진단 시작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진단 시작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진단시 진단요원에 대하여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보호방법 및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을 사전 교육 규정화 및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규정화 되어 있고 매번 진단업무 시작전 사전교육 실시, “보통”은 규정화는 되어 있으나 가끔 진단업무 시작전 사전교육 실시, “미흡”은 규정화도 되어 있지 않고 사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0.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결과

1) 평가 개요

(1). 목적

안전보건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진단 능력 등 진단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진단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주의 우수기관 선택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근거

안전보건진단의 평가는 개정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제4항⁴⁷⁾에 근거하며, 평가기준은 시행규칙 제130조의²⁴⁸⁾(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에 근거한다.

(3). 대상

2014년 현재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안전진단기관 10개소, 보건진단기관 3개소, 건설안전진단기관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평가에 응한 기관은 안전진단기관 3개소, 보건진단기관 3개소 건설안전진단기관 3개소이다.

47)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8) 제130조의²(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2.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평가방법 및 배점

최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교육에 방문하여 기관 기초조사 시 평가도구가 개발되면 평가에 응하겠다고 한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방법을 숙지한 후 그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기준은 4개의 분야로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및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평가항목 수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은 47개 항목 각 배점을 2.13점으로 하였다. 한편,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49개 항목이 기준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12개 항목의 경우 지정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동시에 지정받은 경우 생략이 가능하여 별도로 결과를 수록하였다.

<표 3-1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

평가기준	평가항목 수			비고
	안전 진단	보건 진단	건설 안전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9	9(2)	9	()추가 항목
2)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16	18	16	
3) 시설·장비의 성능	9	9 (10)	9	()추가 항목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3	13	13	
계	47	49 (12)	47	

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일반 현황

(1). 인력현황

일반안전진단기관은 3개 기관이 조사되었으며 기술사는 평균 6명(2명~11명) 이었고 분야별로는 기계기술사 10명, 화공기술사 7명, 전기기술사 1명으로 확인되었고 산업안전 지도사는 2개 기관이 각각 1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산업안전기사는 평균 45명(5명~104명)이었고, 기계, 전기, 화공 및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1개 기관에서 34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1명에서 4명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도사는 2개 기관에서 각각 1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는 2, 4, 6명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분석전담자는 법정 최소인력인 2명을 3개 기관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3개의 건설안전진단기관 조사결과 기술사는 평균 6명(3명~15명) 및 지도사는 평균 1.7명(2명~3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건설안전기사는 평균 8명(2명~20명) 이었고 건설안전산업기사는 평균 1.7명(2명~5명)이 2개 기관에서 활동 중이었다.

<표 3-1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인력 현황

기관 구분	기술사	지도사	기사	산업기사	분석 전담자	계
일반안전진단기관	18	2	135	34		189
보건진단기관	5	2	12	0	6	25
건설안전진단기관	18	7	24	7		56
계	41	11	171	41	6	270

(2). 보유장비 현황

일반안전진단기관의 평균 보유장비 대수는 회전속도측정기 27.7대,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6.3대, 진동측정기 6대, 절연저항측정기 13.3대, 만능회로측정기 15대, 산업용내시경 1.3대, 산소농도측정기 6.7대, 가스농도측정기 6.3대, 접지저항측정기 8.3대이었다. 또한, 재료강도시험기, 표준압력계, 경도측정기, 두께측정기, 가연성가스 검지관, 수압시험기, 계전기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

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는 3개 기관 모두 각각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8> 일반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보유현황(대수)	
	평균	범위
회전속도측정기	27.7	1~80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6.3	1~16
재료강도시험기	1	1
진동측정기	6	1~16
표준압력계	1	1
절연저항측정기	13.3	1~37
만능회로측정기	15	1~41
산업용내시경	1.3	1~2
경도측정기	1	1
산소농도측정기	6.7	1~17
두께측정기	1	1
가스농도측정기	6.3	1~17
가연성가스 검지관	1	1
수압시험기	1	1
접지저항측정기	8.3	1~23
계전기기시험기	1	1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1
정전전위측정기	1	1
차압측정기	1	1

보건진단기관의 법정 필수 보유장비는 7종이다.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는 평균 21.7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검지관 및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는 평균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진측정기는 평균 2.3대,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는 평균 4대,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 측정기기는 평균 1.3대 이었고, 산소측정기와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는 모든 기관이 1대씩 보유하고 있었다.

<표 3-19> 보건진단기관 법정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보유현황(대수)	
	평균	범위
시료 포집기	21.7	5~50
측정기 세트	1	1
분진측정기	2.3	1
소음측정계	4	1~10
광선측정기기	1.3	1~2
산소측정기	1	1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1	1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는 평균 8.7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재료강도시험기는 평균 2대, 진동측정기는 평균 2.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3-20> 건설안전진단기관 법정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보유현황(대수)	
	평균	범위
가스농도측정기	8.7	1~24
산소농도측정기	8.7	1~24
재료강도시험기	2	1~4
진동측정기	2.3	1~4

3)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결과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수준 평가는 4가지 평가기준인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 인력의 교육 이수·능력 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체평가 시 각 항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가)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

자체 운영매뉴얼 보유 여부는 모든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자체 운영매뉴얼 보유 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의 제1장 총칙, 제2장 진단절차, 제4장 보칙, [붙임 3] 최소 진단일수 기준, [붙임 4]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작성요령 등의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모든 내용의 문서화한 경우, “보통”은 시행지침의 50%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미흡”은 시행지침의 50% 미만을 포함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44.4%(4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44.4%(4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기관별로는 보건진단 및 안전진단기관이 44.4%로 가장 높았고 건설안전진단기관이 0%로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내부자체에서 이행되는 방식 또한 인정하였으면 좋겠다와 안전보건공단 및 협회가 시행지침과 소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운영방식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표 3-2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2(66.7)	0(0.0)	4(44.4)
보통	1(33.3)	1(33.3)	2(66.7)	4(44.4)
미흡	0(0.0)	0(0.0)	1(33.3)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나) 안전보건진단 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진단 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항목은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진단결과표의 문서 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단계별 확인 및 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항상 작성자, 검토자가 확인하는 경우, “보통”은 가끔 항상 작성자, 검토자가 확인하는 경우, “미흡”은 항상 작성자, 검토자가 확인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55.6%(5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3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기관별로는 보건진단기관과 안전진단기관이 66.7%로 가장 높았고 건설안전진단기관이 33.3%로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진단 결과표 검토 및 승인을 산업안전위생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있어 평가 기준에 검토자를 명확히 기술사(지도사)의 확인여부로 변경하였다. 또한, 법적 최소 5인으로 구성된다면 작성, 분석, 검토 등의 단계가 너무 부담이라는 의견과 검토는 파일로 확인하고 즉시 개선하므로 전자메일 또한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22>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2(66.7)	1(33.3)	5(55.6)
보통	1(33.3)	0(0.0)	2(66.7)	3(33.3)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산업안전위생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보유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산업안전위생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보유 여부의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자인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포함)를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보통”은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1명 보유한 경우, “미흡”은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66.7%(6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3개소)이었다. 기관별로는 안전진단기관이 100%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66.7%,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진단기관이 33.3%로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기술사 또는 의사가 없는 기관은 없으므로, 미흡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평가기준을 “우수”는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포함)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우, “보통”은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2명 보유한 경우, “미흡”은 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1명 보유한 경우로 재조정하였다. 또한, 법적 기준안에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3-2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술사(지도사) 보유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1(33.3)	6(66.7)
보통	0(0.0)	1(33.3)	2(66.7)	3(33.3)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라) 안전보건진단 종사자의 평균 경력 년 수

안전보건진단 종사자의 평균 경력 년 수의 평가방법은 건설안전진단을 책임지는 종사자의 평균 경력년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보통”은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미흡”은 경력 5년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는 44.4%(4개소), “보통”은 33.3%(3개소) 그리고 “미흡”한 기관은 22.2%(2개소)로 나타났으며, 3개 기관 모두 66.7%가 우수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필요한 경우 모든 종사자의 근속년수 합으로 계산하는 등의 방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보통”은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미흡”은 경력 5년 미만인 경우로 재조정하였다.

한편,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분석제외 인력과 분석인력을 구분하여 평균 경력 수를 산정하였으나 분석인력만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기관의 의견을 받아 통합한 평가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3-2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종사자의 평균 경력 년 수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분석인력 제외	분석인력		
우수	2(66.7)	2(66.7)	0(0.0)	2(66.7)	4(44.4)
보통	1(33.3)	1(33.3)	1(33.3)	1(33.3)	3(33.3)
미흡	0(0.0)	0(0.0)	2(66.7)	0(0.0)	2(22.2)
계	3(100.0)	3(100.0)	3(100.0)	3(100.0)	9(100.0)

마) 안전보건진단시 외부인력의 전문성 여부

안전보건진단시 외부인력의 전문성 여부의 평가방법은 외부인력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7년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건설안전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건설안전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적절한 자격인 경우, “보통”은 1명이 부적절한 자격인 경우, “미흡”은 2명이 부적절한 자격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77.8%(7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22.2%(2개소)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이 100%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조사되었다.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외부인력의 위촉은 기관별로 진단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타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미흡으로 판정되므로, 시대적 요구사항인 서로 다른 분야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므로 보건분야라는 문구를 사용함에 신중(예,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여 경영행정학 관련 교수를 위촉하는 경우 오히려 미흡으로 판정되는 등의 사유 발생이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방법 하단에 경영관리, 산업심리 등의 전문영역을 확대하여 인정하도록 변경하였다.

<표 3-2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진단시 외부인력의 전문성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2(66.7)	7(77.8)
보통	0(0.0)	1(33.3)	1(33.3)	2(22.2)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바)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시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시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의 평가방법은 시정지시 등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 “보통”은 경고 또는 시정지시 경험이 있는 경우, “미흡”은 업무정지 경험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중 77.8%(7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22.2%(2개소)이었다. 기관별로는 보건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일반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조사되었다. 평가방법/기준의 경우 평가주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5년 이내를 최근 2년 이내로 조정하였다.

<표 3-2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시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3(100.0)	2(66.7)	7(77.8)
보통	1(33.3)	0(0.0)	1(33.3)	2(22.2)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사) 안전보건진단결과 고객만족도 또는 민원제기 여부

안전보건진단결과 고객만족도 또는 민원제기 여부의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실시한 경우 근거자료를 조사(고객만족도라 함은 건설안전진단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만족도등을 조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2년 이내에 실시한 적이 있고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보통”은 2년 이전에 실시한 적이 있으나 민원제기가 발생한 경우, “미흡”은 실시한 적이 없고 민원제기도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22.2%(2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44.4%(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33.3%(3개소)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33.3%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0%로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안전보건진단은 대표적인 행정규제이므로, 만족도 조사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3개 기관에서 제안하여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고객만족도 또는 민원제기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1(33.3)	0(0.0)	1(33.3)	2(22.2)
보통	2(66.7)	0(0.0)	2(66.7)	4(44.4)
미흡	0(0.0)	3(100.0)	0(0.0)	3(33.3)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등 인정기관에서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등 인정기관에서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의 평가방법은 최근 5년 이내 표창실적이 있는 경우, 조사하여 기

록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2회 이상, “보통”은 1회, “미흡”은 실적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22.2%(2개소)이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기관 33.3%(3개소),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44.4%(4개소)로 가장 많았다.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신설기관에 불리한 조항으로 경과기간을 부여함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있어 최근 5년 이내를 평가주기를 감안하여 최근 2년 이내로 조정하고 신설기관의 경우 “우수”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진단기관 내실화와 관련성이 적어 평가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와 설립된지 5년 이내이거나 보유인력수가 적은 경우 실적이 없거나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28>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0(0.0)	0(0.0)	2(22.2)
보통	0(0.0)	1(33.3)	2(66.7)	3(33.3)
미흡	1(33.3)	2(66.7)	1(33.3)	4(44.4)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자)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 일수 적정성 여부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 일수 적정성 여부의 평가방법은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를 참여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충족, “보통”은 1회 미충족, “미흡”은 2회 이상 미충족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55.6%(5개소)이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기관 33.3%(3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기관별로

는 일반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33.3%로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은 없었다.

<표 3-29>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 일수
적정성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2(66.7)	5(55.6)
보통	1(33.3)	1(33.3)	1(33.3)	3(33.3)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차)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 한 해당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의 평가(고용노동부고시) 제57조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적합(면제 포함)인 경우, “보통”은 1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미흡”은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3개소 중 66.7%(2개소)이었으며,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33.3%(1개소)가 있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최근 2년간의 정도관리 결과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 후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지정측정기관과 동시에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규정이 없어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30>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2(66.7)
보통		0(0.0)
미흡		1(33.3)
계		3(100.0)

카)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도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진단기관 자체적인 분석 정도관리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그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측정기관으로 동시 지정받은 경우 측정기관 내부규정도 인정가능하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분석에 대한 정도관리 내부규정이 적절하게 수립·시행되는 경우, “보통”은 정도관리 내부규정의 내용이 실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실행이 확인된 경우, “미흡”은 정도관리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3개소 중 66.7%(2개소)이었으며,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33.3%(1개소)가 있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와 동일하게 최근 2년간의 정도관리 결과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 후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적용함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3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2(66.7)
보통		0(0.0)
미흡		1(33.3)
계		3(100.0)

(2).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평가 항목은 안전진단기관 16문항, 보건진단기관 18문항, 건설안전진단기관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번 항목부터 (16)번 항목까지의 안전진단기관과 건설안전진단기관은 평가항목이 유사하나 (17)항목부터 (25) 항목까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평가항목이며,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든 항목은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진단 기관별 평가항목의 세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는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하는 평가기준이다.

가) 안전보건진단 개요 서술의 적정성 여부

안전보건진단 개요 서술의 적정성 여부는 모든 진단기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진단개요에 배경 및 목적, 사업장 개요, 진단 현황, 진단결과, 주요 공정 흐름도 등의 제시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포함하는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3개 기관 모두 “우수”가 100%로 조사되었으며,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진단 개요
서술의 적정성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3(100.0)	3(100.0)	9(100.0)
보통	0(0.0)	0(0.0)	0(0.0)	0(0.0)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나) 안전보건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

안전보건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는 모든 진단기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안전진단 총평에 요약문, 기술적 사항, 관리적 사항의 포함 여부 및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는 “우수”는 모두 포함하고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88.9%(8개소)이었으며,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11.1%(1개소)가 있었다. 기관별로는 일반안전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100.0%이었고 보건진단기관이 66.7%로 조사되었다. 평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총평은 사업장의 CEO에게 보고될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기록되는 바, 항목별 평가는 불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안전보건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으로는 유지시켰다.

<표 3-3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3(100.0)	8(88.9)
보통	0(0.0)	0(0.0)	0(0.0)	0(0.0)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다)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재해율, 재해별 원인이 포함된 현황(내용)의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두 포함하는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66.7%(6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33.3%(3개소)로 나타났다. 3개 진단기관 모두 “우수”가 66.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 33.3%로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재해율을 나열해 놓는 것보다는 통계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이 더욱 중요해 보이며 평가 방법도 이에 맞게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평가기준이 서술된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의 평가기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대상 사업장의 재해율과 재해별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3년간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회사만 적용하고 파악이 불가능한 회사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3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2(66.7)	2(66.7)	6(66.7)
보통	1(33.3)	1(33.3)	1(33.3)	3(33.3)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라)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안전보건 관리체제에는 계층별 역할 및 활동이 서술되어 있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와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 및 건의사항 포함 여부를 안전진단결과보

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계층별 역할 및 활동, 관련 법령, 문제점, 건의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55.6%(5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도 44.4%(4개소)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를 보였고 보건진단기관은 다소 낮은 33.3%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과 보완사항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다와 진단자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3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2(66.7)	5(55.6)
보통	1(33.3)	2(66.7)	1(33.3)	4(44.4)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마)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모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총칙,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보칙) 등의 내용 포함 여부를 안전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안전보건관

리규정의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44.4%(4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44.4%(4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진단기관 별로는 보건진단기관이 66.7%로 가장 높았고 일반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33.3%로 조사되었다. 평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 등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진단의 핵심 항목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의지와 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에 따른 진단의 세부내용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종합안전보건진단만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가방법 및 기준으로 50인 초과 여부에 따른 별도 항목 필요하다는 의견이 2건이 제시되어 평가방법에 안전보건진단보고서는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세부내용을 보고서에 모두 기술할 필요가 없으며, 유의미한 항목만 언급하기 때문에 항목누락 개수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내용의 적합도, 충실도 및 오류 내용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술의 우수성 등으로 일부 변경하였다.

<표 3-3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1(33.3)	2(66.7)	1(33.3)	4(44.4)
보통	1(33.3)	1(33.3)	2(66.7)	4(44.4)
미흡	1(33.3)	0(0.0)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바)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현황, 계층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를 안전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는 “우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77.8%(7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22.2%(2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보건진단기관과 건설안전진단기관이 100.0%로 높았고 일반안전진단기관이 33.3%로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과 대부분의 100인 미만 사업장 구분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용의 적합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등을 반영하여 평가방법에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의 사업장만을 평가하도록 수정하였다.

<표 3-3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1(33.3)	3(100.0)	3(100.0)	7(77.8)
보통	2(66.7)	0(0.0)	0(0.0)	2(22.2)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사)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관련 규정기술과 안전보건점검 실시, 순회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도급조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술된 경우, “보통”은 1개 이상의 사항이 누락되어 기술된 경우, “미흡”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55.6%(5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44.4%(4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과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0%로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33.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은 없었다.

<표 3-38>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2(66.7)	5(55.6)
보통	1(33.3)	2(66.7)	1(33.3)	4(44.4)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아)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49))에 대한

49)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제27조 제2항 관련) :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종류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당해 사업장에 유해·위험한기계·기구가 모두 조사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6개소 중 83.3%(5개소)이었으며,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16.7%(1개소)가 있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은 전체 항목을 전수검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와 사고원인 및 개연성의 위험기구에 관한 점검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고서상에서 실제 위험기계기구 보유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누락여부 보다는 내용의 적합도, 충실도 및 오류내용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표 3-39>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안전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5(83.3)
보통		0(0.0)	0(0.0)	0(0.0)
미흡		0(0.0)	1(33.3)	1(16.7)
계		3(100.0)	3(100.0)	6(100.0)

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 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50)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치, 14. 향타기, 15. 향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에 대한 기술 및 질적 사항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가 모두 조사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6개소 중 83.3%(5개소)이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기관이 16.7%(1개소)가 있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전체 항목을 전수검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사고원인 및 개연성의 위험기구에 관한 점검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고서상에서 실제 안전인증대상 보유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누락여부 보다는 내용의 적합도, 충실도 및 오류내용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표 3-40>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안전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50.0)	5(83.3)
보통		0(0.0)	1()	1(16.7)
미흡		0(0.0)	0(0.0)	0(0.0)
계		3(100.0)	3(100.0)	6(100.0)

50)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 기계·기구 및 설비 :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차)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⁵¹⁾)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적 수준에 대한 사항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가 모두 조사(검사주기, 보유대수, 실시대수, 미실시 대수 등)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6개소 중 83.3%(5개소)이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기관이 16.7%(1개소)이었고,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은 없었다.

<표 3-4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안전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5(83.3)
보통		0(0.0)	1(33.3)	1(16.7)
미흡		0(0.0)	0(0.0)	0(0.0)
계		3(100.0)	3(100.0)	6(100.0)

카)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51) 제29조(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 제외]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와 관련하여 제출대상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 대상 기계·기구의 대상 여부의 기술 및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6개소 중 50.0%(3개소)이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기관이 16.7%(1개소),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33.3%(2개소)로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작성유무만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여부로만 국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작성여부로 변경하였다.

<표 3-42>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안전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3(50.0)
보통		0(0.0)	1(33.3)	1(16.7)
미흡		1(33.3)	1(33.3)	2(33.3)
계		3(100.0)	3(100.0)	6(100.0)

타)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 수준 여부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

설안전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안전작업허가서 허가권자 자격, 안전작업허가서 연장,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일반 안전작업허가서, 작업허가서 보관 등에 대한 사항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6개소 중 33.3%(2개소)이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기관이 50.0%(3개소),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16.7%(1개소)로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진단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미 운용되고 있다와 안전작업허가 시스템을 갖춘 회사 외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누락여부 보다는 내용의 적합도, 충실도 및 오류내용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적 수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유지하였다.

<표 3-4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 수준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안전진단	건설안전	계
평가결과 우수	1(33.3)	1(33.3)	2(33.3)
보통	1(33.3)	2(66.7)	3(50.0)
미흡	1(33.3)	0(0.0)	1(16.7)
계	3(100.0)	3(100.0)	6(100.0)

파)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당

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주기, 위험성평가의 위험등급,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서 양식 등의 내용에 대한 기술과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기술되어 있고 개선의견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1개 이상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사항 기술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33.3%(3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55.6%(5개소), “미흡”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11.1%(1개소)로 조사되었다. 진단기관별로는 3개소 모두 “우수”가 33.3%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은 아직도 위험성평가의 실시가 부족한 현상이 많다고 위험성평가가 작성된 업체 위주의 수준 명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누락여부 보다는 내용의 적합도, 충실도 및 오류내용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3-4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1(33.3)	1(33.3)	1(33.3)	3(33.3)
보통	1(33.3)	2(66.7)	2(66.7)	5(55.6)
미흡	1(33.3)	0(0.0)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하)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당해 사업장의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한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

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하여 모두 적정하게 기술된 경우, “보통”은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게 기술된 경우, “미흡”은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의 기술이 누락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50.0%(3개소)이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기관이 50.0%(3개소)가 있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진단대상 사업장이 소규모인 경우 비상대응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의견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표 3-4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안전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3(50.0)
보통		1(33.3)	2(66.7)	3(50.0)
미흡		0(0.0)	0(0.0)	0(0.0)
계		3(100.0)	3(100.0)	6(100.0)

거)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건설안전진단결과는 공학적·관리적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보통”은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미흡”은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등의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77.8%(7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22.2%(2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보건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일반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에 대하여 보건진단기관의 의견으로 진단시 관련 법규에는 없더라도 핵심적인 문제점은 권장사항으로 제시되어 개선계획서에 반영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위는 다양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진단 업무 수행의 핵심이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3(100.0)	2(66.7)	7(77.8)
보통	1(33.3)	0(0.0)	1(33.3)	2(22.2)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너)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및 그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보통”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미흡”은 협력업체 운영시

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은 없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83.3%(5개소),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16.7%(1개소)이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규모에 따라 위의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와 규모에 따른 평가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누락여부 보다는 내용의 적합도, 충실도 및 오류내용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4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안전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0(0.0)	0(0.0)	0(0.0)
보통		2(66.7)	3(100.0)	5(83.3)
미흡		1(33.3)	0(0.0)	1(16.7)
계		3(100.0)	3(100.0)	6(100.0)

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등의 확인 여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등의 확인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한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의 확인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가 기술된 경우, “보통”은 5개 미만 물질에 대하여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가 누락된 경우, “미흡”은 5개 이상 물질에 대하여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가 누락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3개소 중 100.0%이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보건진단활동에 있어 일정 개수의 검사 여부를 확인

함은 불필요해 보이며, 핵심 문제점 위주의 개선의견 포함여부가 우선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물질 수를 관리대상물질로 수정하면서 기술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표 3-48> 보건진단기관의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등의 확인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3(100.0)
보통		0(0.0)
미흡		0(0.0)
계		3(100.0)

러)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 여부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 면속도, 기기 이상 소음, 베어링 과열 상태, 공기정화시설 테스트, 배풍기 절연저항, 배풍기 회전속도의 기술여부와 국소배기장치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조사대상, 측정기구 및 방법, 평가 및 조치사항 모두 포함하고 있고 국소배기장치 현황 및 개선방안기술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은 없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1개소),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66.7%(2개소)이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계통도와 설계사양 등이 없어 환기분야 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계통도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평가항목은 국소배기장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의 타당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서를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국소배기장치 검사는 안전검사 대상(49종 항목 50%이상 초과시)이 되었을시 실시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평가방법을 수정하였다.

<표 3-49> 보건진단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0(0.0)
보통		1(33.3)
미흡		2(66.7)
계		3(100.0)

며)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기술 여부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기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당해 사업장 주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MSDS 목록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여부,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MSDS가 목록화되어 있고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100.0%(3개소)를 차지하였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건진단을 수행할 경우 MSDS 관련철은 비교적 잘 제출하지만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MSDS자료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점의 파악과 개선방안 등의 제시여부에 평가항목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타제도의 개선사항이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표 3-50> 보건진단기관의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기술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3(100.0)
보통		0(0.0)
미흡		0(0.0)
계		3(100.0)

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의 기록 적절성 여부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의 기록 적절성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현황에 대하여 실시일자, 실시기관, 측정대상물질명(특수건강진단대상 여부), 사용공정, 월간 사용량(kg/월),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현황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 “보통” 및 “미흡”한 기관이 각각 33.3%를 차지하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사업장에서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측정기관의 고유영역인데 사업장 진단시 꼭 필요한 항목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올바른 보건진단을 위해서는 측정결과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평가항목으로 유지하였다.

<표 3-51> 보건진단기관의 측정결과 등의 기록 적절성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1(33.3)
보통		1(33.3)
미흡		1(33.3)
계		3(100.0)

서) 근로자 건강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근로자 건강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현황,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특검대상물질명, 사용공정, 사용량(kg/월)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보통”은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미흡”은 2개 항목 이상 누락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은 없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66.7%(2개소)와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33.3%(1개소)이었다. 평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쉽게 접근할 없는 건강진단기관의 고유 영역이므로 차라리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의 평가항목으로 구성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역시 올바른 보건진단을 위해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전평가 결과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평가방법을 수정하지 않았다.

<표 3-52> 보건진단기관의 근로자 건강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0(0.0)
보통		2(66.7)
미흡		1(33.3)
계		3(100.0)

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확인 및 기술 여부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확인 및 기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현황, 건의사항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현황과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현황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현황과 건의사항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100.0%이었으며,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은 없었다.

<표 3-53> 보건진단기관의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확인 및 기술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3(100.0)
보통		0(0.0)
미흡		0(0.0)
계		3(100.0)

저)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허용기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로 구분 및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건의)사항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이 적절한 경우, “보통”은 5개 미만 화학물질이 누락되거나 모든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사항 기술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5개 이상 화학물질이 누락되거나 모든 항목으로 구분되지 있지 않고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사항 기술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3개소 중 33.3%(5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66.7%(2개소)이었다.

<표 3-54> 보건진단기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1(33.3)
보통		2(66.7)
미흡		0(0.0)
계		3(100.0)

처) 보건규칙 4대 프로그램(대상 사업장에 한함) 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행 상태 여부

보건규칙 4대 프로그램(대상 사업장에 한함) 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행 상태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밀폐공간보존작업프로그램, 청력보존프로그램,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대상 및 해당되는 경우 기술의 적정성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4대 프로그램 모두 기술되어 있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은 1개 프로그램이 누락되거나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미흡”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누락되거나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3개소 중 66.7%(2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16.7%(1개소)이었고,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타 의견은 없었다.

<표 3-55> 보건진단기관의 보건규칙 4대 프로그램 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행 상태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2(66.7)
	보통	1(33.3)
	미흡	0(0.0)
	계	3(100.0)

커)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상 사업장에 한함)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보통”은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미흡”은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등의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83.3%(2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1개소)이었으며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타 의견은 없었다.

<표 3-56> 보건진단기관의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2(66.7)
보통		1(33.3)
미흡		0(0.0)
계		3(100.0)

(3). 시설·장비의 성능

시설·장비의 성능 평가기준은 일반안전진단기관 9문항, 보건진단기관 19문항, 건설안전진단기관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의 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은 평가항목이 유사하나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10)번 항목부터 (19)번 항목은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생략이 가능하지만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11개의 항목은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된다. 시설·장비의 성능을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든 항목은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진단 기관별 평가항목의 세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가)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⁵²⁾, 보건진단기관⁵³⁾ 및 건설안전진단기관⁵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모든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하여 문서화된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와 유지관리지침에는 관리조직, 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및 관리, 검·교정, 불용결정, 손상실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있는 경우, “보통”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다소 미흡한 경우, “미흡”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77.8%(7개소)이었으며, “보통”과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각각 11.1%(1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이 100%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진단은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등은 사용할 사례가 거의 없다와 근로자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진단 장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52) 일반안전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 : 회전속도측정기,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준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측정기, 산업용내시경, 경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두께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가연성가스 검지관, 수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계전기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

53) 보건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공동활용 제외) :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검지관 및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분진측정기,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산소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54) 건설안전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 :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 3-5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2(66.7)	7(77.8)
보통	0(0.0)	0(0.0)	1(33.3)	1(11.1)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나)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법정 필수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대장에 명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보통”은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일부 지정된 경우, “미흡”은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88.9%(8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11.1%(1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과 보건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은 서류로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은 되어 있다와 업무분장 등의 타 자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58>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3(100.0)	2(66.7)	8(88.9)
보통	0(0.0)	0(0.0)	1(33.3)	1(11.)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다)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 방법으로는 주요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목록의 작성·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 “보통”은 일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부적정한 경우, “미흡”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77.8%(7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22.2%(2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과 보건진단기관이 100.0%로 높았고 건설안전진단기관이 33.3%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은 가스농도측정, 산소농도측정 등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공정 및 시기는 제외가 필요하다는 진단내용에 알맞은 장비 사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59>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3(100.0)	1(33.3)	7(77.8)
보통	0(0.0)	0(0.0)	2(66.7)	2(22.2)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라)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⁵⁵⁾, 보건진단기관⁵⁶⁾ 및 건설안전진단기관⁵⁷⁾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은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를, 보건진단기관은 산소농도측정기, 열선풍속계, 조도계, WBGT 등 직독식 장비를, 건설안전진단기관은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등의 직독식 장비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 경우, “보통”은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미흡”은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부적정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77.8%(7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22.2%(2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 100.0%, 보건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조사되었다.

<표 3-60>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2(66.7)	7(77.8)
보통	0(0.0)	1(33.3)	1(33.3)	2(22.2)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마)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55) ①산소농도측정기, ②가스농도측정기

56) ①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②산소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57)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일반안전진단기관의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및 가스농도측정기는 필수항목이며, 두께측정기, 회전속도측정기,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준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측정기, 산업용내시경, 경도측정기, 가연성가스 검지관, 수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계전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는 선택항목이다.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유량계⁵⁸⁾(공기시료채취기 Calibrator), 표준소음발생기(누적소음노출량계 Calibrator), 열선풍속계, 전자저울(또는 표준 분동)을, 건설안전진단기관은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수,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는 선택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안전·보건진단기관별로 법정 필수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 수립 및 문서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일부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미흡”은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66.7%(6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33.3%(3개소)이었다. 3개 기관 모두 “우수”가 66.7%로 조사되었다.

<표 3-6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2(66.7)	2(66.7)	6(66.7)
보통	1(33.3)	1(33.3)	1(33.3)	3(33.3)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58) 지정측정기관과 공동 활용 가능 장비

바)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역시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대상 법적 필수 장비의 정기적인 검·교정이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대상 장비 전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보통”은 대상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미흡”은 검·교정 실시가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55.6%(5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3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33.3%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3-6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2(66.7)	5(55.6)
보통	1(33.3)	1(33.3)	1(33.3)	3(33.3)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사)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비하여야 할 필수 장비 이외의 장비 보유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비하여야 할 필수 장비 이외의 장비 보유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⁵⁹⁾, 보건진단기관⁶⁰⁾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59) ① 초음파두께측정기, ② 클램프미터, ③ 소음측정기, ④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⑤ 조도계, ⑥ 토크게이지, ⑦ 검전기(저압용·고압용·특고압용), ⑧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⑨ 위 기능에 상응하는 기타장비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보유장비를 모두 직접 확인(공동 기기 실습실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불인정)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수별로 점수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22.2%(2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66.7%(6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진단기관 별로는 보건진단기관이 66.7%로 높았고 일반안전과 건설안전진단기관이 0%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이러한 장비는 필요시 최초 보건진단기관 인가시 상기 장비 등을 넣는 등의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시된 장비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필수장비가 아니고 선택장비이므로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비하여야 할 필수 장비 이외의 장비 장비로 안전진단기관에서 조도계, 표면온도계, 열선풍속계, 피해예측정량프로그램(Phast), MT, 접지연속성 시험기, 내전압측정기, 와이어로프 테스터기를 제안하였다.

<표 3-6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필수 장비 이외의 장비 보유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0(0.0)	2(66.7)	0(0.0)	2(22.2)
보통	3(100.0)	0(0.0)	3(100.0)	6(66.7)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60) ①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또는 LC/MS, ② X-선 회절기(XRD), ③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또는 IR/MS, ④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또는 IC/MS, ⑤ GC-질량분석기(GC/MS), ⑥ 석면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부속품(PCM, PLM, EM 등), ⑦ 유도결합플라스마(ICP) 또는 ICP/MS, ⑧ 진동측정이 가능한 주파수분석기 또는 방사선 측정장비, ⑨ 위 기능에 상응하는 기타장비

아)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사무실 등 공간적정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사무실 등 공간적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은 사무실, 장비실 공간 적정 여부를 보건진단기관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공간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별도의 독립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보통”은 별도의 독립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른 공간으로 병행되어 사용하는 경우, “미흡”은 현실적으로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로 볼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88.9%(8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11.1%(1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66.7%로 조사되었다.

<표 3-6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사무실 등 공간적정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3(100.0)	8(88.9)
보통	0(0.0)	1(33.3)	0(0.0)	1(11.1)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자)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현장 진단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용구(안전모, 보안경, 안전대, 안전화,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1개 보호용구가 미흡한 경우, “미흡”은 1개

이상의 보호용구가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66.7%(6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22.2%(2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진단기관별로는 건설안전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33.3%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3-6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3(100.0)	6(66.7)
보통	1(33.3)	1(33.3)	0(0.0)	2(22.2)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차)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실험실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을 보유하고, 정기적 점검 상태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은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미흡”은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66.7%(2개소)이었으며,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16.7%(1개소)이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지정측정 기관과 진단기관은 일부 고가의 장비만 동시 활용하자는 법 취지에 비추어 9~18번 항목의 일률적인 생략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 점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표 3-66>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2(66.7)
보통		0(0.0)
미흡		1(33.3)
계		3(100.0)

카)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
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분석 장비별로 실험실용 후드가 설
치되어야 하며, 분석실 내부 흡후드 제어풍속의 적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후드가 설치되고 적정하게 배기되는 경우, “보통”
은 후드는 있으나 배기상태가 부적정한 경우, “미흡”은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
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33.3%(1개소)이었으며,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66.7%(2개소)이었다.

<표 3-67> 보건진단기관의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1(33.3)
보통		2(66.7)
미흡		0(0.0)
계		3(100.0)

타)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분석 중 발생하는 배액(폐액) 처리를 위한 설비 구비 및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배액처리 설비 및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보통”은 배액처리 설비는 있으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미흡”은 배액처리설비와 관리대장도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66.7%(2개소)이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기관이 16.7%(1개소)이었다.

<표 3-68> 보건진단기관의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2(66.7)
보통		1(33.3)
미흡		0(0.0)
계		3(100.0)

파)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설비를 직접 확인한 후 기록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흡”은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 “보통” 및 “미흡”한 기관이 각각 33.3%로 나타났다.

<표 3-69>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1(33.3)
	보통	1(33.3)
	미흡	1(33.3)
	계	3(100.0)

하)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설비를 직접 확인하여 조치여부를 판단한 후 기록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가스용기에 대해 전도방지 조치를 한 경우, “보통”은 가스용기에 대해 전도방지를 일부 조치한 경우, “미흡”은 가스용기에 대해 전도방지를 전혀 조치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 “보통” 및 “미흡”한 기관이 각각 33.3%로 나타났다.

<표 3-70>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1(33.3)
	보통	1(33.3)
	미흡	1(33.3)
	계	3(100.0)

거)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은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

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분석용 시약장에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시약을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에 보관하는 경우, “보통”은 시약을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에 보관하는 경우, “미흡”은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없이 실험실내에 보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33.3%(1개소)이었으며,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66.7%(2개소)이었다.

<표 3-71>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1(33.3)
	보통	0(0.0)
	미흡	2(66.7)
	계	3(100.0)

너)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시료보관용 냉장실 및 냉동실에는 시료 이외의 것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냉장실 및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보통”은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미흡”은 냉장실과 냉동실 모두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33.3%(1개소)이었으며,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66.7%(2개소)이었다.

<표 3-72> 보건진단기관의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1(33.3)
보통		0(0.0)
미흡		2(66.7)
계		3(100.0)

더)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실험실 내는 흡연 및 음식물 취식 여부와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표지 적정 부착되고 이행되는 경우, “보통”은 금지 표지는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가 이행되는 경우, “미흡”은 흡연 또는 음식물 취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 “보통” 및 “미흡”한 기관이 각각 33.3%로 나타났다.

<표 3-73>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1(33.3)
보통		1(33.3)
미흡		1(33.3)
계		3(100.0)

러)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는 보건진단기관에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실험실 내 유해물질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실험실 내 유해물질 보관 및 취급 장소에 경고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 “보통”은 실험실 내 경고표지 부착이 일부 누락된 경우, “미흡”은 실험실 내 경고표지가 전혀 부착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66.7%(2개소)이었으며,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16.7%(1개소)이었다.

<표 3-74> 보건진단기관의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단위 : 개소(%))

평가결과	기관구분	보건진단
우수		2(66.7)
보통		1(33.3)
미흡		0(0.0)
계		3(100.0)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은 최초 안전진단기관 13문항, 보건진단기관 14문항, 건설안전진단기관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진단인력(분석인력 제외)와 분석인력을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나 다른 진단기관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

반사항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든 항목은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는 일반 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진단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의 문서 수립 및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이 일부 누락된 경우, “미흡”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중 55.6%(5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역시 44.4%(4개소)로 나타났다. 진단기관별로는 보건진단 및 건설안전진단 기관이 66.7%로 가장 높았고 일반안전진단기관이 33.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 3-7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1(33.3)	2(66.7)	2(66.7)	5(55.6)
보통	2(66.7)	1(33.3)	1(33.3)	4(44.4)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나)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 방법으로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 “보통”은 하나만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미흡”은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은 77.8%(7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22.2%(2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과 보건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건설안전진단기관이 33.3%로 나타났다.

<표 3-7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3(100.0)	1(33.3)	7(77.8)
보통	0(0.0)	0(0.0)	2(66.7)	2(22.2)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다)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원에게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원에게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1년 2회 이상인 경우 또는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보통”은 1년에 1회, “미흡”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66.7%(6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33.3%(3개소)로 나타났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건설안전진단기관이 33.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 3-7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원에게도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1(33.3)	6(66.7)
보통	0(0.0)	1(33.3)	2(66.7)	3(33.3)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라)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모든 안전보건진단 인력은 2년에 1회 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진단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통”은 일부 진단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미흡”은 진단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55.6%(5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3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우수한 기관은 보건진단기관(분석인력 제외)이 100.0%로 가장 높았고 일반 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은 66.7%로 조사되었다.

<표 3-78>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분석인력 제외	분석인력		
우수	2(66.7)	3(100.0)	1(33.3)	2(66.7)	5(55.6)
보통	1(33.3)	0(0.0)	1(33.3)	1(33.3)	3(33.3)
미흡	0(0.0)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3(100.0)	9(100.0)

마)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관련된 문서화 여부(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책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진단요원 등에 대하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적 배려, 대학 등의 강의 활동 지원, 학원 수강시 금전적 지원 등을 포괄하여 판단)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보통”은 기관장이 1건이라도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미흡”은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44.4%(4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3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22.2%(2개소)가 있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0%로 나타났다.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진단기관 규모 및 구성원 특성에 따라 실적건수가 달라지므로 실적 건수가 아니라 학회참석 및 교육 등에 소요된 1인당 지원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79>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0(0.0)	2(66.7)	4(44.4)
보통	1(33.3)	1(33.3)	1(33.3)	3(33.3)
미흡	0(0.0)	2(66.7)	0(0.0)	2(22.2)
계	3(100.0)	3(100.0)	3(100.0)	9(100.0)

바)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은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학회지 및 학술대회 연재집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기관 분야별 인력의 연구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연구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보통”은 연구실적이 1건 있는 경우, “미흡”은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11.1%(1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11.1%(1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77.8%(7개소)가 있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연구실적을 제외되어야 한다고 건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연구실적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교나 연구기관과 달리 진단기관은 현장중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능력이 중요하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타 기관평가와 형평을 고려하여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 3-80>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1(33.3)	0(0.0)	0(0.0)	1(11.1)
보통	0(0.0)	1(33.3)	0(0.0)	1(11.1)
미흡	2(66.7)	2(66.7)	3(100.0)	7(77.8)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사)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

전문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은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전문 인력의 상위학위 취득 또는 업무관련 자격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자기개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보통”은 자기개발 실적이 1건인 경우, “미흡”은 자기개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44.4%(4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44.4%(4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진단기관별로는 건설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0%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진단기관 규모 및 구성원 특성에 따라 학위 및 자격증 추가 취득 건수가 달라짐으로 8번 항목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81>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전문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1(33.3)	0(0.0)	3(100.0)	4(44.4)
보통	2(66.7)	2(66.7)	0(0.0)	4(44.4)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아)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은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안전보건 분야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참여 실적(직무교육 제외)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전문인력 모두 1년에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보통”은 전문인력 참여비율이 60~40%인 경우, “미흡”은 4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33.3%(3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55.6%(5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다. 진단기관 별로는 보건진단기관이 66.7%로 가장 높았고, 건설안전진단기관이 0%로 나타났다.

<표 3-82>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1(33.3)	2(66.7)	0(0.0)	3(33.3)
보통	2(66.7)	0(0.0)	3(100.0)	5(55.6)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자)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년간 안전·보건진단기관 분야별 내부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통”은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1회 운영한 경우, “미흡”은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50.0%(3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2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6.7%(1개소)가 있었다. 진단기관 별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이 100.0%이었고, 보건진단기관이 33.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 3-83>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2(66.7)	5(55.6)
보통	1(33.3)	1(33.3)	1(33.3)	3(33.3)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차)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대장 등의 작성·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를 보유하는 경우, “보통”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를 보유하는 경우, “미흡”은 전혀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55.6%(5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3개소)와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1.1%(1개소)가 있었

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66.7%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33.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인 안전진단기관에 물품관리까지 항목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84> 안전·보건진단기관별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2(66.7)	5(55.6)
보통	1(33.3)	1(33.3)	1(33.3)	3(33.3)
미흡	0(0.0)	1(33.3)	0(0.0)	1(11.1)
계	3(100.0)	3(100.0)	3(100.0)	9(100.0)

카) 안전보건진단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안전보건진단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의 보존기한(3년) 명시 및 상시 열람이 가능한 환경 내 보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적정한 경우, “보통”은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미흡”은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66.7%(6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 33.3%(3개소)로 조사되었다. 진단기관별로는 건설안전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33.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 3-85>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1(33.3)	3(100.0)	6(66.7)
보통	1(33.3)	2(66.7)	0(0.0)	3(33.3)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9(100.0)

타)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 송부기한 준수 여부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 송부기한 준수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진단결과외 보고)에 따라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항상 준수하는 경우, “보통”은 준수하지 못한 1건이 확인된 경우, “미흡”은 1건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88.9%(8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11.1%(1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기관이 66.7%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3-86> 안전·보건진단기관별 결과보고서 송부기한 준수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3(100.0)	2(66.7)	3(100.0)	8(88.9)
보통	0(0.0)	1(33.3)	0(0.0)	1(11.1)
미흡	0(0.0)	0(0.0)	0(0.0)	0(0.0)
계	3(100.0)	3(100.0)	3(100.0)	6(100.0)

파) 안전보건진단 시작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진단 시작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방법으로는 진단시 진단요원에 대하여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보호방법 및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을 사전 교육 규정화 및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으로 “우수”는 규정화 되어 있고 매번 진단업무 시작전 사전교육 실시, “보통”은 규정화는 되어 있으나 가끔 진단업무 시작전 사전교육 실시, “미흡”은 규정화도 되어 있지 않고 사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이 총 9개소 중 22.2%(2개소)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44.4%(4개소), “미흡”으로 응답한 기관이 33.3%(3개소)이었다. 진단기관별로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이 66.7%로 가장 높았고 보건진단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이 0%로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진단 사업장마다 각각 특성이 달라 현장에서 구두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바, 서류화하여 증명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87>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진단 시작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단위 : 개소(%))

기관구분 평가결과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	계
우수	2(66.7)	0(0.0)	0(0.0)	2(22.2)
보통	1(33.3)	2(66.7)	1(33.3)	4(44.4)
미흡	0(0.0)	1(33.3)	2(66.7)	3(33.3)
계	3(100.0)	3(100.0)	3(100.0)	9(100.0)

4) 기타 사항

기타사항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과 평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기관 평

가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진단업무는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100개의 사업장을 진단하면 100개의 해결책이 다 다른 상대적이며 특이한 업무이며(관리체제별, 업종별, 규모별, 유해물질별), 각종 실시여부만을 체크하는 검사행위와 진단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계량화·점수화가 현재의 과학적 시스템으로 개발된 표준화된 평가기법 등으로 가능한지 우려된다는 점과, 자칫 표준화라는 틀에 의해 1개의 사업장이라도 핵심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지정측정기관과 동시 지정인 경우 생략 가능 부분에서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측정기관 평가 시 미흡으로 확인된 사항은 어떻게 점수를 산정하는지, 지정측정기관 점검 점수를 확인하여 반영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경우 평가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은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건설안전진단기관의 평가는 소규모에서 대규모업체까지 실시되므로 진단업체 규모에 따라서 평가항목 또한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건설안전진단기관 평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의견에는 내부평가로 건설안전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 전달, 교육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요 중점항목으로 배정하고 이것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안전보건진단평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의견으로는 보건진단기관은 각각의 특화된 장점이 있는 바, 기관별 평가 후 서열화보다는 분야별 우수 등급 등의 관리로 진단기관 간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운영함이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이라 의견이 있었고, 다른 기관의 경우 평가진행시 평가자는 모두 동일인이 모든 기관을 평가해야 할 것이며, 특히,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단기관 평가 시 외형적 실적이 중심이 된 단편적이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적용되면 평가 오류 및 불공정한 결과로 신설기관이

나 규모가 작은 진단기관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3점 척도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7점 척도 이상으로 변경,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 진단장비 관련해서는 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으므로 유지관리 관련 항목을 줄이고 활용실적 항목을 포함, 단순 실적 건수로 평가지표를 삼으면 진단기관 규모에 따라 유·불리하게 됨으로 진단요원 1인당 실적비(%) 등으로 변경, 진단반 편성은 진단대상에 맞는 전문분야 및 기술수준의 진단요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 평가항목별 중요도가 다르므로 평가항목별 비중에 따른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다는 세세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11. 법령 및 하위규정 제도 개선안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지정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법과 시행규칙을 비교·검토하였다.

1) 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의 개정

<표 3-88> 평가대상 기관의 법령 비교

기관명	법령내용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③ <생략> 기관"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기관명	법령내용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석면해체· 제거업자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생략>
지정측정 기관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⑥ <생략>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특수건강	제43조(건강진단) ①~⑧ <생략>

기관명	법령내용
진단기관	<p>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p> <p>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p> <p>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3.6.12.></p>

기관별 평가와 관련된 법 조항을 비교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개정은 제4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9>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신 설></p> <p>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 15조의2를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⑤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 15조의2를 준용한다.</p>

2) 시행규칙 제130조의2 신설

기관별 평가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평가기준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을 검토하였다.

<표 3-90> 기관별 평가기준 관련 비교

기관명	시행규칙 내용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p>시행규칙 제32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운영 실적 및 실태 2.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활용도 및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3.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의 적정성·충실성 4. 기술지도를 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빈도, 재해의 규모 등 재해 발생 현황 <p>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3.12.]</p>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p>시행규칙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기관명	시행규칙 내용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26]
석면해체· 제거업자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 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 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지정측정 기관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 제9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특수건강 진단기관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 43조제10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건강진단·분석 능력

기관명	시행규칙 내용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기관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비교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2.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2항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표 3-9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0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신 설>	제130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 4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기관의 안전·보건진단 수준을 평가

현행	개정안
<p>② <신 설></p>	<p>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2.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3)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신설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기에 앞서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와 관련 고시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1).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평가대상 및 평가실시기관, 평가실시기관의 업무,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평가실무위원회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표 3-92>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고시 비교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및 평가실시 기관	<p>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운영위원회 등</p> <p>제30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제31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 다만, 평가일 현재 등록된 날부터 1년 미만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31조(평가실시기관) 평가를 실시하</p>	<p>제1장 평가대상기관 등</p> <p>제67조(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은 영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 평가계획을 공고한 날(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68조(평가실시기관) 평가를 실시하</p>	-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는 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는 기관(이하 “평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으로 한다.	
평가실시 기관의 업무		<p>제69조(평가실시기관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 2. 평가표의 개발 및 보완 3.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4. 평가기준의 적정성 확보 5. 평가자료 수집 및 결과 보고 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p>제70조(평가주기 등) ① 평가는 2년</p>	<p>제33조(평가주기 등) ① 기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p>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2조(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1조(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7조(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p>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하되, 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p>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⑥ 평가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p>	<p>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하되, 고용노동부, 공단 및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p>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p>	<p>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하되, 고용노동부, 공단 및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p>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p>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p>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p> <p>제33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대상 선정 3. 평가방법 4. 평가항목 및 배점 5.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6. 운영위원회 운영 7.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p>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2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방법 3.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4.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5. 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6.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p>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8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방법 3.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4.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5. 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6.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항 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실무 위원회	제34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안전성 평가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제73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의 직업건강 업무 관련 부서의 장(실장·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련학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자와 공단 직원 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29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단에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 담당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공단 및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공단이 위촉한다.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p>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위원장은 평가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직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p> <p>제35조(평가실무위원회의 업무)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세부일정 수립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3. 세부 평가방법 수립 4. 평가표 개발 및 보완 5. 평가반 구성 및 운영 	<p>제74조(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자 구성·운영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및 결과의 집계·이의신청서 검토 3. 평가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p>제30조(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자 구성·운영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및 집계·이의신청 3. 평가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6. 평가결과의 집계 및 검토 7. 운영위원회에서 위임·결정된 사항 8. 그 밖에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평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평가기준, 평가계획의 공고, 평가자, 평가실시, 정보누설 금지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였다.

<표 3-93>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고시 비교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기준	제2절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제36조(평가기준 등) ① 공단은 규칙 제80조의8에 따른 평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내용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최근 1년간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	-
평가계획	제37조(평가계획의 공고) 공단은 평가	제75조(평가계획의 공고) 공단은 평가	제34조(실시계획공고) 공단은 평가 실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의 공고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 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시 30일 전까지 평가 실시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평가자	<p>제38조(평가반) ① 평가반은 공단 소속 직원 중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② 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반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p>		<p>제31조(평가자) 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자는 공단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p> <p>③ 평가자는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32조(수당 등)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평가자에게 공단여비 규칙 및 운영수당 지급규칙에 따라</p>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실시	<p>제39조(평가실시 등) ① 공단은 평가 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없는 등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p>	<p>제77조(평가실시 등) ① 공단은 평가 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평가자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정도관리결과 자료 2. 규칙 제94조에 따라 공단에 송 	<p>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5조(평가 실시 등) ① 공단은 평가 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평가자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결과 자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특수건강진단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p>③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④ 평가반은 평가를 완료한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공단은 평가반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실무위원회에 검토의뢰하여야 한다.</p> <p>⑥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평가점수를 통보</p>	<p>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전산자료</p> <p>③ 평가자는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p> <p>⑤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대상기관은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p>	<p>결과표 전산입력자료</p> <p>③ 평가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은 평가결과보고서를 평가실무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⑤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대상기관은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p>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p>하여야 한다.</p> <p>⑦ 평가대상 등록업체는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⑧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p> <p>⑨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수 있다.</p> <p>⑦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평가실무위원회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p> <p>⑧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8조(수당 등)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 위원 및 평가자에게 공단여비규</p>	<p>수 있다.</p> <p>⑦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평가실무위원회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p> <p>⑧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칩 및 운영수당 지급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정보누설 금지	제40조(정보누설 금지)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평가등급 결정, 평가결과의 공표, 평가결과의 활용, 재검토 기한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였다.

<표 3-94>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고시 비교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제3절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제4장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제3절 평가결과
평가등급 결정	<p>제41조(평가등급 결정)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실시를 거부한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p> <p>1. S 등급: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p>	<p>제79조(평가등급 결정)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대상기관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p> <p>1. S(우수) 등급: 합계 평점이 90점</p>	<p>제36조(평가등급 결정)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대상기관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p> <p>1. S 등급: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p>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2. A 등급: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 등급: 합계 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 5. D 등급: 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 등급별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등록업체별 평가등급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이상 2. A(양호) 등급: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보통)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미흡)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등급의 분포를 고려하여 제1항의 등급별 기준점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	2. A 등급: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등급의 분포를 고려하여 제1항의 등급별 기준점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대상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는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의 공표	<p>제42조(평가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라 등록업체의 평가등급을 공표할 수 있다.</p> <p>②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p>	<p>제80조(평가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평가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평가결과의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p>	<p>제37조(평가결과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평가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평가결과의 공표는 고용노동부 또는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p>
평가결과 의 활용	<p>제4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를</p>	<p>제8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 시 우선고려하고, 제13조에 따른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3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 시 우선적고려하고,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p>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p>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p>	<p>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p>
재검토 기한	<p>제4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5년 1월 25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p>	<p>제82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6년 8월 1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p>	<p>제39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p>

기관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안전성 평가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안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와 관련 고시의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00. 0.0 고용노동부고시 제92-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진단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7조와 별표 16, 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진단기관을 말한다.

3.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나.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다. 시설·장비의 성능

라.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안전·보건진단기관 점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6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행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장 평가대상기관 등

제4조(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은 영 제33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한다. 다만,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계획을 공고한 날(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실시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평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으로 한다.

제6조(평가실시기관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
2. 평가표의 개발 및 보완
3.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4. 평가기준의 적정성 확보
5. 평가자료 수집 및 결과 보고

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주기 등) ①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공단 및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방법
3.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4.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 5. 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 6.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 7.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의 안전·보건진단 업무관련 부서의 장(실장·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련학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자와 공단직원 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11조(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자 구성·운영
-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및 결과의 집계·이의신청서 검토
- 3. 평가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4. 그 밖의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평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 위원 및 평가자에게 공단여비규칙 및 운영수당 지급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절차 등

제13조(평가계획의 공고) 공단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4조(평가반) ① 평가반은 공단 소속 직원 중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전문가는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반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실시 등) ① 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상기관은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평가실무위원회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누설 금지)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제17조(평가등급 결정)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대상기관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S(우수) 등급: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2. A(양호) 등급: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보통)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미흡)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등급의 분포를 고려하여 제1항의 등급별 기준점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평가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의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 시 우선 고려하고, 제3조에 따른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영 제3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진단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00년 0월 0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4)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심사안

규제 신설(또는 강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제4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1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을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2.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2항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신설함

<표 3-95>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주기적인 평수행 ※ 강화	제 49 조 (안전 · 보건 진 단 등) ④ <신 설>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④ <u>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기준	제 130 조 의 2 (안전 · 보건 진 단 기관 의 평 가 등) ①	제 130 조 의 2 (안전 · 보건 진 단 기관 의 평 가 등) ① <u>고용노동</u>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등을 정함 ※ 신설	<신 설>	<p>부장관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2.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2).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행정적규제	○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신뢰성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평가 실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행정적규제				○
3. 소관부처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화학사고예방과											

<p>작성자 인적사항</p>	<p>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화학사고예방과장 ○○○, 사무관 ○○○</p>																				
<p>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규모</th> <th>의견수렴 방식</th> <th>의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안전보건진단기관</td> <td>35개 기관</td> <td>입법예고 및 개정안 의견조회</td> <td></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관련부처</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유 형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안전보건진단기관	35개 기관	입법예고 및 개정안 의견조회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	-	-	-
유 형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안전보건진단기관	35개 기관	입법예고 및 개정안 의견조회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	-	-	-																	
<p>5. 규제 존속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존속 기한 미설정사유 - 안전·보건진단 평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계획이므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p>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규제 - 안전·보건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 																				
<p>7. 규제체계도</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평가계획수립 (안전보건공단)</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평가실시 (안전보건공단)</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평가결과 통보 (안전보건공단)</div> </div>																				

(3). 규제 의 필요성

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신뢰성 및 내실화 등의 수준 향상이 필요
평가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보증능력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규정된 기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서비스의 우수성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환경측정기관,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은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평가가 진행

이에 반해 안전·보건진단기관은 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근거에 대한 법률은 물론 평가기준,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나) 진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가 필요

모든 근로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사고와 질병 없이 생활하기를 희망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환경측정기관,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경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2년에 1회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따라서 동일한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인 안전·보건진단기관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추진

(4).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 대안은 없음

나) 규제의 비용분석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평가를 받기 위

한 규제의 비용이 발생함

다만, 안전·보건진단기관은 2014년 8월 현재 35개소이며, 행정적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 편익분석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현재의 평가를 안전·보건진단기관까지 확대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안전보건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망·부상 및 질병의 위험률 감소에 따른 근로자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삶의 가치 증대 및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 기대

(5).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제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환경측정기관, 근로자건강진단기관 등에 대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인 안전·보건진단기관도 대다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질적 담보를 위해 평가제도의 도입은 형평성이 있고 타당한 규제라고 보여짐

나) 이해관계자 협의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에 대한 사전 방문평가를 통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취결과 13.5%는 매우 필요, 37.5%는 필요, 50%는 보통으로 응답하여 절반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향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실시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평가는 별도의 인력·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12.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 표준화방안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규칙 및 평가관련 고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현장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를 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 일반 현황과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 일반 현황

(1). 기관 일반현황

안전·보건진단기관 일반현황은 기관명, 소재지, 진단기관 구분,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분야별 자격현황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기관명			
소재지	(-)		
진단기관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안전 <input type="checkbox"/> 보건진단 <input type="checkbox"/> 건설안전		
관할(지)청	총인원: ____명	산업안전관리기술사: ____명	
		산업위생관리기술사: ____명	
		산업안전지도사: ____명	
		산업보건지도사: ____명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____ ()명	
		산업위생기사(산업기사): ____ ()명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____ ()명	
대표자		기계기사(산업기사): ____ ()명	
전화번호		전기기사(산업기사): ____ ()명	
		분석전담자: ____명	
지정일자	최초지정일:	변경지정일:	

(2). 평가일시 및 평가결과 획득점수

평가일은 재평가를 대비하여 평가일과 2차 재평가일로 구분하였다.

평가일(1차)	2000년 월 일	평가일(2차 재평가)	2000년 월 일
---------	-----------	-------------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기준은 4개이며 각 항목별 가중치를 우선 안전보건 진단의 능력 15%,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40%, 시설·장비의 성능 30%, 그 밖의 제반사항 15%로 구성하였다.

총 점			
평가항목(가중치)	점수	평가항목(가중치)	점수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15%)		2.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40%)	
3. 시설·장비의 성능(30%)		4. 그 밖의 제반사항(15%)	

(3). 평가 확인

평가반원은 3명 내외로 구성하며, 피평가기관의 경우 책임자와 참여자의 날인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표로 구성하였다.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반원				
평가반원				
평가반원				

구 분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대상기관(책임자)			
평가대상기관(참여자)			

2)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안전·보건진단기관별 총 평가항목수는 일반안전진단기관과 건설안전진단기관이 46문항으로 총 4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고,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총 60문항

에 5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표 3-96>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항목별 항목수 및 점수 구분

평가 기준	항목명	항목수	진단기관구분		
			일반안전	보건진단	건설안전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9(11)	95점(23.8%)	125점(25.0%)	95점(23.8%)
2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16(18)	180점(45.0%)	180점(36.0%)	180점(45.0%)
3	시설·장비의 성능	9(19)	70점(17.5%)	140점(28.0%)	70점(17.5%)
4	그 밖의 제반사항	13	55점(13.8%)	55점(11.0%)	55점(13.8%)
계		47(61)	400점(100%)	500점(%)	400점(100%)

※ () : 보건진단기관 항목수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안전보건진단의 능력은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경우 평가항목은 9개 문항이며 보건진단기관은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점은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95점이고, 보건진단기관은 125점이다.

<표 3-97>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항목별 가중치 및 최고 점수

연번	항목명	진단기관 구분	가중치	평가	최고 점수
1.1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	공통	3	A,B,C	10
1.2	안전보건진단 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공통	3	A,B,C	15
1.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산업안전위생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보유 여부	공통	3	A,B,C	15
1.4	안전보건진단 종사자의 평균 경력 년 수	공통	2	A,B,C	10
1.5	안전보건진단시 외부인력의 전문성 여부	공통	2	A,B,C	10

연번	항목명	진단기관 구분	가중 치	평가	최고 점수
1.6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시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공통	1	A,B,C	5
1.7	안전보건진단결과 고객만족도 또는 민원제기 여부(△)	공통	2	A,B,C	10
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등 인정기관에서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공통	1	A,B,C	5
1.9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 일수 적정성 여부	공통	3	A,B,C	15
1.10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결과 여부	보건진단	3	A,B,C	15
1.11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보건진단	3	A,B,C	15
안전진단 및 건설안전 평가항목 9문항, 보건진단 11개 문항			총점: 95(125)점		

안전보건진단의 능력의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평가항목 1.1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체 운영매뉴얼을 확보하여 조사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모든 내용의 문서화	<input type="checkbox"/> 우수
	시행지침의 50%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시행지침의 50%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의 제1장 총칙, 제2장 진단절차, 제4장 보칙, [붙임 3] 최소 진단일수 기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 [붙임 4]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작성요령 등의 포함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2		안전보건진단 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 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항상 작성자, 기술사(지도사)가 확인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가끔 항상 작성자, 기술사(지도사)가 확인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항상 작성자, 기술사(지도사)가 확인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진단결과표의 문서 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단계별 확인(결재)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안전보건진단결과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산업안전위생기술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확인하여 조사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 포함)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를 2명 보유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가 1명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산업(건설)안전위생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자인 기술사(산업[건설]안전보건지도사)보유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4		안전보건진단 종사자의 평균 경력 년 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종사자의 경력증명서 등을 조사	평균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평균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평균 경력 5년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안전보건진단 종사자의 평균 경력년수 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5		안전보건진단시 외부인력의 전문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외부 인력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 후 조사	모두 적절한 자격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명이 부적절한 자격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명이 부적절한 자격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외부인력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건설)안전보건분야의 기술사,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7년 이상, 산업(건설)안전보건지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산업(건설)안전보건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보건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보건분야 이외에 경영관리, 산업심리 등의 전문영역은 인정)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6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시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경고 또는 시정지시 관련 공문 여부를 조사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경고 또는 시정지시 경험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업무정지 경험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시정지시 등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7	안전보건진단결과 고객만족도 또는 민원제기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서류 또는 민원제기 공문 등을 조사	2년 이내에 실시한 적이 있고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2년 이전에 실시한 적이 있으나 민원제기가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실시한 적이 없고 민원제기도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최근 2년간 실시한 경우 근거자료를 조사(고객만족도라 함은 보건진단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만족도등을 조사한 경우를 의미)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등 인정기관에서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표창 등의 실적자료를 조사	2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우수
	1회	<input type="checkbox"/>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표창실적이 있는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9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 일수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조사	모두 충족	<input type="checkbox"/> 우수
	1회 미충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2회 이상 미충족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를 참여 여부(진단일수 10일 이상 : 특급 5인·일 이상, 진단일수 20일 이상 : 특급 10인·일 이상, 진단일수 30일 이상 : 특급 15인·일 이상, 진단일수 50일 이상 : 특급 15인·일 이상, 진단일수 100일 이상 : 특급 30인·일 이상, 진단일수 300일 이상 : 특급 100인·일 이상)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10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 결과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정도관리 관련 문서 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자료 확보	모두 적합(면제 포함)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의 평가(고용노동부고시) 제57조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결과
-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만 해당
- ※ 점검서류 : 관련 공문 등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1.11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내부 분석정도관리 관련 서류를 조사	분석에 대한 정도관리 내부규정이 적정하게 수립·시행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정도관리 내부규정의 내용이 실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실행이 확인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정도관리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진단기관 자체적인 분석 정도관리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그 실행 여부(측정기관으로 동시 지정받은 경우 측정기관 내부 규정도 인정)
-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만 해당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2).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영역은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경우 평가항목은 16개 문항이며 보건진단기관은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점은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160점이고, 보건진단기관은 180점이다.

<표 3-98>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 항목별 가중치 및 최고 점수

연번	항목명	진단기관 구분	가중치	평가	최고 점수
2.1	안전보건진단 개요 서술의 적정성 여부	공통	1	A,B,C	5
2.2	안전보건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	공통	2	A,B,C	10
2.3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	공통	2	A,B,C	10
2.4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	공통	2	A,B,C	10
2.5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	공통	2	A,B,C	10
2.6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	공통	2	A,B,C	10
2.7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	공통	2	A,B,C	10
2.8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진단 건설안전	3	A,B,C	15
2.9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진단 건설안전	3	A,B,C	15
2.10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진단 건설안전	3	A,B,C	15
2.11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안전진단 건설안전	3	A,B,C	15
2.12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 수준 여부	안전진단 건설안전	2	A,B,C	10
2.13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	공통	2	A,B,C	10
2.14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	안전진단 건설안전	2	A,B,C	10
2.15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	공통	3	A,B,C	15
2.16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안전진단 건설안전	2	A,B,C	10
2.1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등의 확인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연번	항목명	진단기관 구분	가중치	평가	최고점수
2.18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2.19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기술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2.20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의 기록 적절성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2.21	근로자 건강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2.2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확인 및 기술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2.23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2.24	보건규칙 4대 프로그램(대상 사업장에 한함) 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행 상태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2.25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상 사업장에 한함)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평가항목: 안전진단 및 건설안전 16개 문항, 보건진단 18개 문항			총점: 160(180)점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신뢰도의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평가항목 2.1	안전보건진단 개요 서술의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모두 포함하고 서술된 내용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진단개요에 배경 및 목적, 사업장 개요, 진단 현황, 진단결과, 주요 공정 흐름도 등의 제시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2	안전보건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보통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안전보건진단 총평에 요약문, 기술적 사항, 관리적 사항의 포함여부 및 질적 수준을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3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모두 포함하고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보통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재해율, 재해별 원인이 포함된 현황(내용)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4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계층별 역할 및 활동, 관련 법령, 문제점, 건의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계층별 역할 및 활동이 서술되어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와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 및 건의사항 포함 여부를 보건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5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개선의견 등 기술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총칙,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보칙) 등의 내용 포함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6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 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현황, 계층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를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7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 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도급조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술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개 이상의 사항이 누락되어 기술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관련 규정기술과 안전보건점검 실시, 순회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8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당해 사업장에 유해·위험한기계·기구가 모두 조사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제27조제2항 관련) :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치, 14. 향타기, 15. 향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 진단기관 구분 :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9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당해 사업장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가 모두 조사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에 대한 기술 및 질적사항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 기계·기구 및 설비 :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진단기관 구분 :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10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당해 사업장의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가 모두 조사(검사주기, 보유대수, 실시대수, 미실시 대수 등)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

- 제29조(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 제외]에 대한 사항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11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작성 여부)의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해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 대상 기계·기구의 대상 여부의 기술 및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와 관련하여 제출대상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대한 기술(작성 여부)의 적정성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12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 수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모든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안전작업허가서 허가권자 자격, 안전작업허가서 연장,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일반 안전작업허가서, 작업허가서 보관 등에 대한 사항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13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기술되어 있고 개선의견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1개 이상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사항 기술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당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주기, 위험성평가의 위험등급,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서 양식 등의 내용에 대한 기술과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14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하여 모두 적정하게 기술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게 기술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의 기술이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당해 사업장의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한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15		안전보건진단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등의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안전보건진단결과는 공학적·관리적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작성 여부를 안전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16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및 그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1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등의 확인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가 기술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기술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 다수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한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의 측정 및 기준 준수의 확인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관리대상물질 중 노출기준 50% 이상 초과에 한함)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평가항목 2.18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조사대상, 측정기구 및 방법, 평가 및 조치사항 모두 포함하고 있고 국소배기장치 현황 및 개선방안기술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 면속도, 기기 이상 소음, 베어링 과열 상태, 공기정화시설 테스트, 배풍기 절연저항, 배풍기 회전속도의 기술여부와 국소배기장치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국소배기장치 검사는 안전검사 대상 49종 항목 중 노출기준 50% 이상 초과에 한함)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평가항목 2.19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기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MSDS가 목록화되어 있고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방안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당해 사업장 주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MSDS 목록화,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여부,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20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의 기록 적절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현황에 대하여 실시일자, 실시기관, 측정대상물질명(특수건강진단대상 여부), 사용공정, 월간 사용량(kg/월),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현황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21		근로자 건강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현황,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특검대상물질명, 사용공정, 사용량(kg/월)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2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확인 및 기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현황과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현황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현황과 건의사항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현황, 건의사항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23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록의 적절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이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5개 미만 화학물질이 누락되거나 모든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사항 기술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5개 이상 화학물질이 누락되거나 모든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고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사항 기술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허용기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로 구분 및 사업주 조치사항과 개선(건의)사항 등의 기술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24		보건규칙 4대 프로그램(대상 사업장에 한함) 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행 상태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4대 프로그램 모두 기술되어 있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프로그램이 누락되거나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누락되거나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청력보존프로그램,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대상 및 해당되는 경우 기술의 적정성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2.25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상 사업장에 한함)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 5개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조사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보건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3). 시설·장비의 성능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시설·장비의 성능 영역은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경우 평가항목은 9개 문항이며 보건진단기관은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점은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70점이고, 보건진단기관은 140점이다.

<표 3-99> 시설·장비의 성능 항목별 가중치 및 최고 점수

연번	항목명	진단기관 구분	가중치	평가	최고 점수
3.1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공통	2	A,B,C	10
3.2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공통	1	A,B,C	5
3.3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공통	1	A,B,C	5
3.4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공통	2	A,B,C	10
3.5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공통	2	A,B,C	10
3.6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공통	2	A,B,C	10
3.7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비하여야 할 필수 장비 이외의 장비 보유 여부	공통	2	A,B,C	10
3.8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사무실 등 공간적정 여부	공통	1	A,B,C	5
3.9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공통	1	A,B,C	5
3.10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3.11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보건진단	1	A,B,C	5
3.12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보건진단	1	A,B,C	5
3.13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3.14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보건진단	1	A,B,C	5
3.15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보건진단	1	A,B,C	10
3.16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보건진단	2	A,B,C	10
3.17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보건진단	1	A,B,C	5

연번	항목명	진단기관 구분	가중 치	평가	최고 점수
3.18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보건진단	1	A,B,C	5
3.19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 정 부착 여부	보건진단	1	A,B,C	5
평가항목: 안전진단 및 건설안전 9개 문항, 보건진단 19개 문항			총점: 70(140)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시설·장비의 성능의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평가항목 3.1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을 조사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다소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모든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하여 문서화된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유지관리지침에는 관리조직, 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및 관리, 검·교정, 불용결정, 손상실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 ※ 일반안전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 : 회전속도측정기,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준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측정기, 산업용내시경, 경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두께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가연성가스 검지관, 수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계전기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
- ※ 보건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공동활용 제외) : ①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②검지관 및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③분진측정기, ④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⑤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⑥산소측정기, ⑦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⑧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 ※ 건설안전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 :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2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장비 매뉴얼과 장비대장을 조사	법정 필수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대장에 명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우수	
	법정 필수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대장에 명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통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법정 필수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대장에 명시 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3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법정 필수 장비가 포함된 장비대장을 조사	모든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일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부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주요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목록의 작성·관리 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4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직독식 장비의 가동 여부 등을 조사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p>※ 참고사항 : 직독식 장비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여부</p> <p>※ 보건진단기관의 직독식 장비 : ①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②산소측정기, ③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④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p> <p>※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의 직독식 장비 : ①산소농도측정기, ②가스농도측정기</p> <p>※ 진단기관 구분 : 공통</p> <p>※ 점검서류 :</p> <p>※ 첨부/증빙 자료 : <input type="checkbox"/>유 <input type="checkbox"/>무</p>		

평가항목 3.5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교정 계획이 수립된 문서를 조사	법정 필수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 수립 및 문서 보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우수
	일부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법정 필수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 수립 및 문서 보관 여부
- ※ 안전진단기관 대상 장비 : 회전속도측정기,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준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측정기, 산업용내시경, 경도측정기, 두께측정기, 수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계전기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수정 필요)
- ※ 보건진단기관 대상 장비 : 유량계(공기시료채취기 Calibrator), 표준소음발생기(누적소음노출량계 Calibrator), 열선풍속계, 전자저울→지정측정기관과 공동 활용 가능 장비(수정 필요)
- ※ 건설안전진단기관 대상 장비 :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수정 필요)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6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교정을 실시한 증빙 서류를 조사	대상 장비 전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대상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검·교정 실시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대상 법적 필수 장비의 정기적인 검·교정이 실시 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7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비하여야 할 필수 장비 이외의 장비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장비종류 및 가동 여부를 조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5대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3~4대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2대 이하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p>※ 참고사항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법정 필수장비 이외의 보유장비를 모두 직접 확인(공동 기기 실습실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불인정)</p> <p>※ 일반안전진단기관 대상 장비 : 초음파두께측정기, 클램프미터, 소음측정기,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조도계, 토크게이지, 검전기(저압용·고압용·특고압용),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위 기능에 상응하는 기타장비(수정 필요)</p> <p>※ 보건진단기관 대상 장비 :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또는 LC/MS, X-선 회절기(XRD),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또는 IR/MS,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또는 IC/MS, GC-질량분석기(GC/MS), 석면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부속품(PCM, PLM, EM 등), 유도결합플라즈마(ICP) 또는 ICP/MS, 진동측정이 가능한 주파수분석기 또는 방사선 측정장비, 위 기능에 상응하는 기타장비</p> <p>※ 건설안전진단기관 대상 장비</p> <p>※ 진단기관 구분 : 공통</p> <p>※ 점검서류 :</p> <p>※ 첨부/증빙 자료 : <input type="checkbox"/>유 <input type="checkbox"/>무</p>		

평가항목 3.8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사무실 등 공간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사무실, 장비실, 상담실 및 실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별도의 독립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별도의 독립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른 공간으로 병행되어 사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별도의 독립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른 공간으로 병행되어 사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내 사무실, 장비실 공간 적정 여부, 보건진단기관의 경우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 실험실 공간 적정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9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보호구를 현장에서 조사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개 보호용구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1개 이상의 보호용구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현장 진단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용구(안전모, 보안경, 안전대, 안전화,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의 구비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0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을 보유 및 정기적 점검 상태를 조사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을 보유하고, 정기적 점검 상태 확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우수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을 보유하고, 정기적 점검 상태 확인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1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흡후드 설치 및 적정 제어풍속 유지 여부를 조사	후드가 설치되고 적정하게 배기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후드는 있으나 배기상태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분석 장비별로 실험실용 후드가 설치되어야 하며, 분석실 내부 흡 후드 제어풍속의 적정 유지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2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배액처리 설비를 직접 확인하거나 위탁처리실적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배액처리 설비 및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배액처리 설비 및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액처리설비와 관리대장도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분석 중 발생하는 배액(폐액) 처리를 위한 설비 구비 및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3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 및 세안설비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직접 조사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설비를 직접 확인한 후 기록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4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가스용기에 대한 전도 방지 조치 여부를 직접 조사	설비를 직접 확인하여 조치여부를 판단한 후 기록	<input type="checkbox"/> 우수
	가스용기에 대해 전도방지를 일부 조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가스용기에 대해 전도방지를 일부 조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설비를 직접 확인하여 조치여부를 판단한 후 기록
-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5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용 시약장에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설치여부를 조사	시약을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에 보관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시약을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에 보관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없이 실험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분석용 시약장에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설치 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6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보호용구의 종류를 직접 확인하여 조사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1개 이상의 보호용구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실험실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보호용구(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 마스크, 유기용제용 장갑, 실험복 등)의 구비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7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냉장실 및 냉동실을 직접 확인하여 조사	시료보관용 냉장실 및 냉동실에는 시료 이외의 것 보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우수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시료보관용 냉장실 및 냉동실에는 시료 이외의 것 보관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8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 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표지 부착여부를 조사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표지 적정 부착되고 이행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금지 표지는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가 이행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흡연 또는 음식물 취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3.19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	실험실 내 유해물질 보관 및 취급 장소에 경고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실험실 내 경고표지 부착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실험실 내 경고표지 부착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실험실 내 유해물질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 부착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보건진단기관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영역은 모든 진단기관의 평가항목이 13개 문항이며, 총점은 55점으로 구성하였다.

<표 3-100> 그 밖의 제반사항 항목별 가중치 및 최고 점수

연번	항목명	진단기관 구분	가중치	평가	최고 점수
4.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공통	1	A,B,C	5
4.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공통	1	A,B,C	5
4.3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원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	공통	1	A,B,C	5
4.4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공통	2	A,B,C	10
4.5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공통	0.5	A,B,C	2.5
4.6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공통	0.5	A,B,C	2.5
4.7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	공통	0.5	A,B,C	2.5
4.8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	공통	0.5	A,B,C	2.5
4.9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공통	0.5	A,B,C	2.5
4.10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공통	0.5	A,B,C	2.5
4.11	안전보건진단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공통	0.5	A,B,C	2.5
4.12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 송부기한 준수 여부	공통	0.5	A,B,C	2.5
4.13	안전보건진단 시작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공통	2	A,B,C	10
평가항목: 12개 문항			총점: 55점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의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평가항목 4.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교육·훈련 계획 수립 문서를 확인하여 조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진단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의 문서 수립 및 적정 이행 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4.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문서를 확인하여 조사	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하나만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 작성 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4.3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원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재직 중에 받은 교육의 증빙자료를 조사	1년 2회 이상인 경우 또는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1년에 1회	<input type="checkbox"/> 보통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이수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전문교육이라 함은 한국산업 안전관련 학회의 참석,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 -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로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단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파트 타임 근로자 등)▶파견 근로자 : 인력파견(공급) 업체에 고용된 뒤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파견돼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평가항목 4.4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이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재직 중에 받은 교육의 증빙자료를 조사	모든 진단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일부 진단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진단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모든 진단 인력은 2년에 1회 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평가항목 4.5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의 증빙자료를 조사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기관장이 1건이라도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관련된 문서화 여부(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책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진단요원 등에 대하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적 배려, 대학 등의 강의 활동 지원, 학원 수강시 금전적 지원 등을 포괄하여 판단)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4.6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학술지 및 학회 발표 자료집 게재 실적 등을 조사	연구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연구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최근 2년간 학회지 및 학술대회 연제집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의 연구 실적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4.7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자기계발 실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인력이 상위학위를 취득하거나 업무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실적을 조사	자기계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자기계발 실적이 1건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자기계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최근 2년간 전문 인력의 상위학위 취득 또는 업무관련 자격증 추가 취득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4.8		안전·보건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각종 산업(건설)안전보건 분야 학술대회 참석 현황을 조사	전문인력 모두 1년에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전문인력 참여비율이 60~40%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40%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참고사항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참여 실적(직무교육 제외)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4.9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 실적을 확인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1회 초과 운영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1회 운영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최근 2년간 안전·보건진단기관 내부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 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4.10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대장(전자파일) 등을 조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일부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전혀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대장 등의 작성·관리 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4.11	안전보건진단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무작위로 5개 추출하여 조사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의 보존기한(3년) 명시 및 상시 열람이 가능한 환경내 보관여부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항목 4.12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 송부기한 준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결과 관련 기록의 송부 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항상 준수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우수
	준수하지 못한 1건이 확인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통
	1건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흡

-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진단결과의 보고)에 따라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여부(문서관리대상 등을 통해 확인)
-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p>평가항목 4.13</p>	<p>안전보건진단 시작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p>	
<p>평가방법</p>	<p>평가기준</p>	<p>평가결과</p>
<p>안전진단 자체메뉴얼 확인 및 실시 여부 증 빙자료를 조사</p>	<p>규정화 되어 있고 매번 진단업무 시작 전 사전교육 실시하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우수</p>
	<p>규정화는 되어 있으나 가끔 진단업무 시작전 사전교육 실시하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보통</p>
	<p>규정화도 되어 있지 않고 사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미흡</p>

※ 참고사항 : 진단 시 진단요원에 대하여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보호방법
및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을 사전 교육 규정화 및 실시 여부

※ 진단기관 구분 : 공통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IV. 요약 및 결론

2014년 8월 현재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진단기관 10개소, 보건진단기관 3개소 건설안전진단기관 2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대부분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진단물량 대비 진단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환경측정기관, 근로자건강진단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 신뢰성 및 내실화 등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가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진단기관도 당연히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타 지정기관의 평가제도와 비교 및 검토,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방문 기초조사를 실시,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을 위한 관련 기준 검토 등을 통하여 법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도개선안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등의 지정기관 평가 관련 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과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ILO 협약 등 외국의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타 지정기관의 평가제도와 비교 및 검토를 통하여 4가지 평가기준(안전보건진단의 능력,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을 도

출시했다. 셋째,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석면해체·제거 안정성 평가도구의 평가항목의 비교로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세부지침안을 마련하였고, 평가기준별 평가항목 수를 안전·보건진단의 능력의 경우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은 9문항, 보건진단기관 11문항,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는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16문항, 보건진단기관 18문항, 시설·장비의 성능은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9문항, 보건진단기관 10문항,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모든 기관에 적용가능한 13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4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세부지침안을 근거로 안전·보건진단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제4항의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로 제안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1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진단의 능력
2.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2항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신설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정성 평가, 지정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와 관련 고시의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3조), 제2장 평가대상기관 등(제4조 내지 7조), 제3장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내지 제12조), 제4장 평가절차 등(제13조 내지 제16조), 제5장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제17조 내지 제20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 표준화방안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 일반 현황에 대한 조사표와 안전·보건진단기관 4개의 평가기준(안전·보건진단의 능력,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별 평가표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별과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령, 규칙, 2014
- 고용노동부. 2012년 산업재해 현황, 2013
-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37호), 2012
-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013-78), 2013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71호), 2014
-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5호)
- 고용노동부. 전국제조업체작업환경일제조사, 2009
-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2012
-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
- 김규상, 김태균, 원용립 등.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기준 및 평가 매뉴얼 개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 김원갑. 산업안전보건 진단사업의 발전방안, 1989.
- 김정훈 등. 사업장 화학물질 등 관리규칙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 김현욱, 정춘화, 피영규, 이승철.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및 석면제품 실태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8
- 박두용등. 외국에서의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및 관리체계와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보고서, 2005
-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안전위생법, 2011
- 양혁승, 최재욱, 윤석준 등. 보건관리 대행기관 평가기법 및

- 업무수행기준 마련 연구. 대한예방의학회 2005년도 제57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pp.375
- 정지연, 피영규, 김치년 등.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측정기관평가 표준화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8
- 최재욱, 이영순, 구정완 등. 안전관리보건관리 대행기관 평가기법 및
업무 수행기준 마련 연구. 노동부, 2004
-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Futur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Needs and Prioriti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Un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nd
Standards, Framework Directive
- HSE, The Health and Safety: The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1996.
- HS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 HSE, Health and Safety Regulation...A Shot Guide
- HSE, Consulting Employees on Health and Safety: A Guide to the
Law
- OSH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Standardization for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s Assessment

<Abstract>

Young Gyu Phee, Jong Hyeon Jung, Ji-Woong Kang, Sa-Woo Lee¹

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Dep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¹

Now,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is designated as general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In addition, safety diagnostic institution 10 places,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s 3 places, construction safety institution 22 places are also designated. Most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s are in metropolitan area, diagnostic institution situations are low compared to diagnostic quantities.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purpos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ervice Agencies has guidance organization o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stitutions of basic construction industry, asbestos demolition and removal work, institutions of measuring working environment, worker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Most institutions are pursuing evaluation system to improve the level of reliability, substantiality and etc. This study was performed in the need to make the rating system for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Research and diagnostic methods are: i)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f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s regulation, ii) Comparison and review evaluation system of other specified institutions, iii) Doing visit basic research of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iv) Diagnostic criteria review for safety and health diagnosis manual development, v) We prepared improvements of laws and sub-regulations through this method.

The research results are: First, we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to reconfirm regulation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We presented the Industrial Safety & Health Act assessment regulations for designated agencies like institutions of measuring working environment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s, etc. In addition, specified diagnosis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safety and health diagnosis, and safety diagnostic regulations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we presented previous research reviews of assess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designated agencies and foreign agencies diagnosis lik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of Japan and ILO conventions.

Second, through comparison and review of evaluation system in other designated agency, we compared the criteria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designated measurement agency, special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and asbestos. Results of the assessment, the four criteria

(the ability of safety and health diagnosis, the reliability of safety and health diagnosis results, performance of facility and equipment, completion of education and completion of education of people, computerization degree and other matters) was derived.

Third, through review of criteria for developing safety and health diagnosis manual, we prepared assessment guidelines of safety and health diagnosis. In safety and health diagnosis ability, general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and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consist of 9 questions,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consist of 11 questions, in reliability of safety and health diagnosis results, general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and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consist of 16 questions,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consist of 18 questions, in performance of facility and equipment, general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and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consist of 9 questions,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consist of 10 questions, in completion of education and completion of education of people, computerization degree and other matters, we developed 13 questions which are applicable every institutions. Survey of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assessment guiding principle of details of four developed criteria.

We prepar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rticle 49 amendments and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new items. In addition, we prepared notification new items of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s institution assessment, standardization measurement of safety and health diagnostic institution assessment.

< 부 록 >

부록 1 .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 관련 평가/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진단 전문가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지정측정기관의 평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안전보건관련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구한의대학교에 「안전·보건진단기관 내실화 및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의견을 분명히 반영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도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진단기관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스스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보시고 평가항목별로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별도로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안전보건진단 기관의 평가도구 개발에 앞서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귀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피영규

▣ 작성된 평가표는 ㅎ·ㄴ글에 직접 작성하시어 이메일(kangjw@dhu.ac.kr)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팩스(053-819-1209)로 11월 21일 [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를 작성하실 때 꼭 지켜 주십시오 ●

1. 반드시 진단기관 관련 전문가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연구 수행자가 귀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작성하신 분과 면담 가능합니다.

2. 반드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답변/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 중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안전 및 건설안전분야 : 대구한의대학교 강지웅 ☎ (053) 819-1803

1. 기관명 ()

2. 인원 현황

- ① 산업안전관리 기술사 (총 명)
- 기계(명), 화공(명), 전기(명)
- ② 산업안전지도사 (명)
- ③ 산업안전기사 (명)
- ④ 산업안전산업기사 (명)
- ⑤ 기계기사 (명)

- ⑥ 기계산업기사 (명)
- ⑦ 전기기사 (명)
- ⑧ 전기산업기사 (명)
- ⑨ 화공기사 (명)
- ⑩ 화공산업기사 (명)

3. 보유 장비 현황

- 1. 회전속도측정기 (대)
-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대)
- 3. 재료강도시험기 (대)
- 4. 진동측정기 (대)
- 5. 표준압력계 (대)
- 6. 절연저항측정기 (대)
- 7. 만능회로측정기 (대)
- 8. 산업용내시경 (대)
- 9. 경도측정기 (대)
- 10. 산소농도측정기 (대)
- 12. 가스농도측정기 (대)
- 13. 가연성가스 검지관 (대)
- 14. 수압시험기 (대)
- 15. 접지저항측정기 (대)
- 16. 계전기기시험기(대)
-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대)
- 18. 정전전위측정기(대)
- 19. 차압측정기 (대)

평가항목 1 안전진단 자체 운영매뉴얼의 보유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산업안전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자인 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보유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포함)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우, “보통” : 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를 2명 보유한 경우, “미흡” : 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1명 있는 경우

문 3-1 만일, 항목 3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4. 일반안전진단기관 종사자의 평균 경력 년 수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일반안전진단 종사자의 평균 경력년수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평균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보통” : 평균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미흡” : 평균 경력 5년 미만인 경우

문 4-1 만일, 항목 4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5. 일반안전진단시 외부인력의 전문성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외부인력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분야의 기술사,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7년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안전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안전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안전분야 이외에 경영관리, 산업심리 등의 전문영역은 인정)
-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두 적절한 자격인 경우, “보통” : 1명이 부적절한 자격인 경우, “미흡” : 2명이 부적절한 자격의 경우

문 5-1 만일, 항목 5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 _____
- 2) 평가방법/기준 _____

평가항목 6. 최근 2년간 일반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시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시정지시 등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 ② 평가기준 : “우수” :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 “보통” : 경고 또는 시정지시 경험이 있는 경우, “미흡” : 업무정지 경험이 있는 경우

문 6-1 만일, 항목 6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 _____
- 2) 평가방법/기준 _____

평가항목 7. 일반안전진단결과 고객만족도 또는 민원제기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최근 2년간 실시한 경우 근거자료를 조사(고객만족도라 함은 일반 안전진단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만족도등을 조사한 경우를 의미)
- ② 평가기준 : “우수” : 2년 이내에 실시한 적이 있고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보통” : 2년 이전에 실시한 적이 있으나 민원제기가 발생한 경우, “미흡” : 실시한 적이 없고 민원제기도 발생한 경우

문 7-1 만일, 항목 7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8.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등 인정기관에서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표창실적이 있는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 ② 평가기준 : “우수” : 2회 이상, “보통” : 1회, “미흡” : 실적이 없는 경우

문 8-1 만일, 항목 8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9.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 일수 적정성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① 평가방법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를 참여 여부
진단일수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두 충족, “보통” : 1회 미충족, “미흡” : 2회 이상 미충족
문 9-1 만일, 항목 12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 안전진단 개요 서술의 적정성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① 평가방법 : 진단개요에 배경 및 목적, 사업장 개요, 진단 현황, 진단결과, 주요
공정 흐름도 등의 제시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두 포함하는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
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
흡한 경우

문 1-1 만일, 항목 1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
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2. 안전진단 총평 서술의 적정성 여부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안전진단 총평에 요약문, 기술적 사항, 관리적 사항의 포함여부 및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
-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두 포함하고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

문 2-1 만일, 항목 2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3. 재해발생 현황 기술의 적정 기록 여부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재해율, 재해별 원인이 포함된 현황(내용)의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
-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두 포함하는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문 3-1 만일, 항목 3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4.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술의 기록 여부① 우수② 보통③ 미흡**※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계층별 역할 및 활동이 서술되어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와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 및 건의사항 포함 여부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② 평가기준 : “**우수**” : 계층별 역할 및 활동, 관련 법령, 문제점, 건의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문 4-1 만일, 항목 4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5.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술의 기록 여부① 우수② 보통③ 미흡**※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총칙,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보칙) 등의 내용 포함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② 평가기준 :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문 5-1 만일, 항목 5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

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6. 안전보건교육 기술의 적정성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① 평가방법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현황, 계층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② 평가기준 : “**우수**” :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수준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문 6-1 만일, 항목 6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7. 도급사업 운영관련 기술의 적정성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①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관련 규정기술과 안전보건점검 실시, 순회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② 평가기준 : “**우수**” : 도급조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술된 경우, “**보통**” : 1개 이상의 사항이 누락되어 기술된 경우, “**미흡**” :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에 대한 기술 및 질적사항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 기계·기구 및 설비 :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② 평가기준 : “우수” : 당해 사업장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가 모두 조사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문 9-1 만일, 항목 9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0.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 ① 우수
- ② 보통
-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종류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적 수준
 - 제29조(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

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 4. 리프트, 5. 압력 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 제외]에 대한 사항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② 평가기준 : “우수” : 당해 사업장의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가 모두 조사(검사주기, 보유대수, 실시대수, 미실시 대수 등)되고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문 10-1 만일, 항목 10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 _____
2) 평가방법/기준 _____

평가항목 11.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와 관련하여 제출대상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대한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② 평가기준 : “우수” :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 대상 기계·기구의 대상 여부의 기술 및 개선대책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서술된 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서술내용이 미흡한 경우

문 11-1 만일, 항목 11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2. 안전작업허가시스템 작성에 대한 질적 수준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안전작업허가서 허가권자 자격, 안전작업허가서 연장,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일반 안전작업허가서, 작업허가서 보관 등에 대한 사항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든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건의사항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보통인 경우, “미흡” : 2개 항목 이상 누락되거나 기술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경우

문 12-1 만일, 항목 12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3.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당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주기, 위험성평가의 위험등급,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서 양식 등의 내용에 대한 기술과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질적 수준을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기술되어 있고 개선의견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보통” : 1개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이 보통인 경우, “미흡” : 1개 이상 항목이 누락되거나 개선사항 기술이 미흡한 경우

문 13-1 만일, 항목 13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4. 비상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기술 여부

- ① 우수
- ② 보통
-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당해 사업장의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한 기술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② 평가기준 : “**우수**” :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하여 모두 적정하게 기술된 경우, “**보통**” :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게 기술된 경우, “**미흡**” : 비상대응 매뉴얼 및 사고처리 절차서의 기술이 누락된 경우

문 14-1 만일, 항목 14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5. 안전진단결과의 질적 수준 여부

- ① 우수
- ② 보통
-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안전진단결과는 공학적·관리적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② 평가기준 : “**우수**” :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보통**” :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미흡**” :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등의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

문 15-1 만일, 항목 15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6. 기타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기술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및 그 기술의 질적 수준 여부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 ② 평가기준 : “**우수**” :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보통**” :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1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미흡**” : 협력업체 운영시스템, 비정상작업 관리시스템, 물류운반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문 16-1 만일, 항목 16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 법정 필수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 모든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하여 문서화된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 유지관리지침에는 관리조직, 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및 관리, 검교정, 불용결정, 손상실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 일반안전진단기관 법적 필수 장비 : 회전속도측정기,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준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측정기, 산업용내시경, 경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두께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가연성가스 검지관, 수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계전기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

- ② 평가기준 : “우수” :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있는 경우, “보통” :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다소 미흡한 경우, “미흡” :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없는 경우

문 1-1 만일, 항목 1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2.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법정 필수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 대장에 명시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보통” :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일부 지정된 경우, “미흡” :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문 2-1 만일, 항목 2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3. 법정 필수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주요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목록의 작성·관리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든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일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부적정한 경우, “미흡” :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미흡한 경우

문 3-1 만일, 항목 3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4. 법정 필수 장비 중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등 직독식 장비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여부
- ※ 직독식 장비 : ①산소농도측정기, ②가스농도측정기, ③, ④
- ② 평가기준 : “우수” :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미흡” :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부적정한 경우

문 4-1 만일, 항목 4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5.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① 우수② 보통③ 미흡**※ 평가방법 및 기준**

① 평가방법 : 법정 필수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 수립 및 문서 보관 여부

※ 대상 장비 : 회전속도측정기,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표준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측정기, 산업용내시경, 경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두께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가연성가스 검지관, 수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계전기시험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정전전위측정기, 차압측정기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든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보통**” : 일부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미흡**” :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문 5-1 만일, 항목 5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6.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① 우수② 보통③ 미흡**※ 평가방법 및 기준**

① 평가방법 : 대상 법적 필수 장비의 정기적인 검·교정이 실시 여부

② 평가기준 : “**우수**” : 대상 장비 전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보통**” : 대상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미흡**” : 검·교정 실시가 미흡한 경우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진단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의 문서 수립 및 적정 이행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이 일부 누락된 경우, “미흡” :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문 1-1 만일, 항목 1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2. 일반안전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일반안전진단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 작성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 “보통” : 하나만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미흡” :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문 2-1 만일, 항목 2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3.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원과 상응하는 교육훈련 제공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이수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전문교육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학회 등의 참석,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로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단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파트 타임 근로자 등)▶파견 근로자 : 인력파견(공급) 업체에 고용된 뒤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파견돼 일하는 근로자등이 이에 해당

- ② 평가기준 : “우수” : 1년 2회 이상인 경우 또는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명확한 확인 필요), “보통” : 1년에 1회, “미흡” :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문 3-1 만일, 항목 3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4. 일반안전진단기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모든 일반안전진단 인력은 2년에 1회 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전문교육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학회 등의 참석,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
-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든 진단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통” : 일부 진단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미흡” : 진단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 미흡한 경우

문 4-1 만일, 항목 4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5. 일반안전진단기관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① 평가방법 :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관련된 문서화 여부

-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책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진단요원 등에 대하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적 배려, 대학 등의 강의 활동 지원, 학원 수강시 금전적 지원 등을 포괄하여 판단

② 평가기준 : “**우수**” :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보통**” : 기관장이 1건이라도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미흡**” :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

문 5-1 만일, 항목 5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6. 일반안전진단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① 평가방법 : 최근 2년간 학회지 및 학술대회 연제집 등을 포함한 측정기관 인력의 연구 실적

② 평가기준 : “**우수**” : 연구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보통**” : 연구실적이 1건 있는 경우, “**미흡**” :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문 6-1 만일, 항목 6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7. 일반안전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자기계발 실적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최근 2년간 전문 인력의 상위학위 취득 또는 업무관련 자격증 추가 취득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자기계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보통” : 자기계발 실적이 1건인 경우, “미흡” : 자기계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문 7-1 만일, 항목 7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8. 일반안전진단기관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여 실적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최근 2년간 산업안전 분야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참여 실적(직무교육 제외)
- ② 평가기준 : “우수” : 전문인력 모두 1년에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보통” : 전문인력 참여비율이 60 ~ 40%인 경우, “미흡” : 40% 미만인 경우

문 8-1 만일, 항목 8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9. 일반안전진단기관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최근 2년간 일반안전진단기관 내부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통**” :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1회 운영한 경우, “**미흡**” :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 9-1 만일, 항목 9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항목_____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0. 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대장 등의 작성·관리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모든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보통**” : 일부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미흡**” : 전혀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 10-1 만일, 항목 10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1. 안전진단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보존기한(3년) 명시 및 상시 열람이 가능한 환경내 보관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적정한 경우, “보통” :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미흡” :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경우

문 11-1 만일, 항목 11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2.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송부기한⁶¹⁾ 준수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진단결과와 보고)에 따라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항상 준수하는 경우, “보통” : 준수하지 못한 1건이 확인된 경우, “미흡” : 1건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

문 12-1 만일, 항목 12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9(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평가항목 13. 일반안전진단 시작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① 우수 ② 보통 ③ 미흡

※ 평가방법 및 기준

- ① 평가방법 : 진단 시 진단요원에 대하여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보호방법 및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을 사전 교육 규정화 및 실시 여부
- ② 평가기준 : “우수” : 규정화 되어 있고 매번 진단업무 시작전 사전교육 실시, “보통” : 규정화는 되어 있으나 가끔 진단업무 시작전 사전교육 실시, “미흡” : 규정화도 되어 있지 않고 사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

문 13-1 만일, 항목 13에 대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방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가항목_____
- 2) 평가방법/기준_____

1. 일반안전진단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의견이 없으시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일반안전진단기관 평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없으시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구진 》

연구기관 : 대구한의대학교

연구책임자 : 피영규(부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연구원 : 정종현(조교수, 대구한의대학교)

강지웅(조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이사우(조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연구보조원 : 이준정(대구한의대학교)

배혜정(대구한의대학교)

남미란(대구한의대학교)

연구상대역 : 장창봉(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연구기간 》

2014. 8. 12. ~ 2014. 12. 10.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4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
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안전보건진단기관 내실화 및 평가제도 도입방안

(2014-연구원-1117)

발 행 일 : 2014년 12월 10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권혁면

연구책임자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피영규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680-23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 7030-824

F A X : (052) 7030-337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